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경찰의 치안역할 정립 방안 연구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경찰의 치안역할 정립 방안 연구

《 研 究 陣 》

연구위원 : 김 원 중 (청주대학교 교수)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1. 연구내용	11
2. 연구방법	13
제3절 연구흐름도	15
제2장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16
제1절 다문화 사회의 개념	16
1. 다문화 사회의 의미	16
2.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접근 방식에 대한 모델	17
제2절 다문화주의	19
1. 다문화주의의 논의	19
2.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21
제3절 한국사회내의 다문화	22
1. 한국사회 다문화 현상의 배경	22
2. 한국사회 다문화의 특징과 문제점	23
제4절 외국의 다문화주의	28
1. 미국의 다문화주의	28
2. 이탈리아의 다문화주의	32
제3장 다문화가정의 실태 분석	36
제1절 다문화가정의 의의	36
1.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의	36
2. 다문화가정의 정의	37
제2절 다문화가정의 현황	38
1. 국제결혼의 현황	38
2. 국제결혼의 이혼추세	41

3.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실태	42
제3절 다문화가정내의 자녀	44
1. 다문화가정내의 자녀 실태	44
2. 이주 노동자 자녀 현황	48
제4장 다문화가정의 인권침해 실태 및 수요조사	50
제1절 다문화가정내 인권 침해 실태 연구	50
1. 다문화가정내 부부간 인권 침해 유형	50
2.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인권침해	54
제2절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 실태조사	55
1. 다문화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55
2. 경찰관에 대한 실태조사	77
제5장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치안 역할 정립	102
제1절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역할의 기본방향	102
1. 경찰의 기본 역할	102
2. 경찰의 체계 정립	104
제2절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역할	110
1.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 활동	110
2.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경찰 활동	115
제3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 방안	117
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역할	118
2.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12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6
제1절 결 론	126
제2절 정책 제언	128
참 고 문 헌	130
부록 1 다문화가정 치안 실태조사(외국인여성용)	132
부록 2 다문화가정 치안 실태조사(경찰관용)	143

표 목 차

〈표 3.1〉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 구성 전망(10년)	39
〈표 3.2〉 국제결혼의 국적별 순위	40
〈표 3.3〉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41
〈표 3.4〉 외국인 주민 실태:2007년 4월 기준	42
〈표 3.5〉 외국인 등록 인구	43
〈표 3.6〉 다문화가정의 자녀 현황:2007년 기준	45
〈표 3.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재학현황	46
〈표 3.8〉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	47
〈표 3.9〉 이주 노동자 자녀 현황	48
〈표 4.1〉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발생률	51
〈표 4.2〉 한국내 부부간 폭력발생	52
〈표 4.3〉 다문화가정의 폭력행위 유형별 발생률	53
〈표 4.4〉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 조사대상	57
〈표 4.5〉 조사대상 경찰관 일반 사항	79

그림 목 차

〔그림 4.1〕 가족간의 의사소통	58
〔그림 4.2〕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 가정생활 만족도	58
〔그림 4.3〕 가정생활의 불만 원인	59
〔그림 4.4〕 한국 국적취득 유무	59
〔그림 4.5〕 한국 국적 취득하지 않은 이유	60
〔그림 4.6〕 결혼 후 가정내 폭력 및 인권침해 경험	61
〔그림 4.7〕 파출소 등에 대한 신고	62
〔그림 4.8〕 집과 경찰기관과의 거리	63
〔그림 4.9〕 관할 경찰기관과의 거리	63
〔그림 4.10〕 경찰공무원의 순찰여부	64
〔그림 4.11〕 경찰공무원의 순찰 횟수	64

[그림 4.12]	경찰공무원의 도움 여부	65
[그림 4.13]	경찰공무원이 가정폭력 등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이유	66
[그림 4.14]	한국내에서 출산 경험	66
[그림 4.15]	자녀들의 수	67
[그림 4.16]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폭행 피해	68
[그림 4.17]	자녀들의 폭행 및 인권침해 피해 이유	68
[그림 4.18]	자녀의 인권침해시 신고 여부	69
[그림 4.19]	폭행이나 따돌림 경험시 상담경험	70
[그림 4.20]	경찰기관 방문시 의사소통	71
[그림 4.21]	경찰공무원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	71
[그림 4.22]	통역경찰공무원 근무 여부	72
[그림 4.23]	거주지의 안전도	72
[그림 4.24]	경찰기관의 변화 방향	73
[그림 4.25]	책임 담당제 필요성	74
[그림 4.26]	파출소 증설 필요성	74
[그림 4.27]	치안위한 경찰조직의 적정성	75
[그림 4.28]	경찰공무원의 순찰활동 적정성	75
[그림 4.29]	경찰공무원의 치안 노력	76
[그림 4.30]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80
[그림 4.31]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대책 실시 적절여부	80
[그림 4.32]	관할지역내 다문화가정 유무	81
[그림 4.33]	다문화가정내 여성 및 자녀들의 인권침해	82
[그림 4.34]	외국인 여성과의 의사소통	83
[그림 4.35]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침해 신고시 출동	83
[그림 4.36]	경찰공무원의 출동 횟수	84
[그림 4.37]	경찰공무원의 출동에 따른 협조	84
[그림 4.38]	경찰공무원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	85
[그림 4.39]	인권침해시 신고	86
[그림 4.40]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	86
[그림 4.41]	출동후 처리 방법	87
[그림 4.42]	인권침해시 피해자	87

[그림 4.43]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의 인권침해 이유	88
[그림 4.44]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 적응도	89
[그림 4.45] 다문화가정내 자녀에 대한 관심여부	89
[그림 4.46]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에 대한 대응자세	90
[그림 4.47] 통역담당 경찰공무원 유무	90
[그림 4.48] 향후 통역 담당 경찰공무원 배치 필요 기관	91
[그림 4.49] 필요한 통역 담당 경찰공무원 수	91
[그림 4.50] 통역 담당 언어	92
[그림 4.51] 경찰의 변화 방향	93
[그림 4.52] 다문화가정 지역내 순찰	93
[그림 4.53] 순찰 횟수	94
[그림 4.54] 다문화가정 거주지역의 치안	94
[그림 4.55] 경찰서 등의 조직 적당성	95
[그림 4.56] 치안활동의 적정성	95
[그림 4.57] 경찰기관의 치안확보 노력	96
[그림 4.58] 지역별 책임 담당제	96
[그림 4.59] 순찰 방법	97
[그림 4.60] 경찰 방문	97
[그림 4.61] 경찰 방문 횟수	98
[그림 4.62] 치안관리 기관	98
[그림 4.63] 다문화가정 전담 경찰관제	99
[그림 4.64] 전담경찰관의 필요인력	99
[그림 4.65] 치안교육의 필요성	100
[그림 4.66] 교육방법	100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1세기 세계화 속에서 국경을 넘어선 이주의 흐름은 이제 우리 사회에 하나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세계화가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단일민족에 의한 단일문화는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다. 우리사회는 다양한 민족이 살아가는 혼합된 문화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농촌총각들의 결혼증가라는 이유를 들어 중국과 동남아 등의 여성들을 배우자로 맞이하여 결혼이주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으로 인한 외국여성의 이주는 전체 이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국제결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은 최근 15년 사이에 약 50배나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신혼부부 10쌍중 1쌍 꼴로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 농어촌의 경우 신혼부부 10쌍중 4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는 2007년 5월 기준으로 6천300명의 결혼이민자가 살고 있으며, 경북지역의 경우 농어촌 총각 2명 중 1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있다. 결혼에 의한 이민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에 의한 이민자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는 비율은 2004년 31.7%, 2005년 43.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경우 결혼건수는 2001년 1만 5884건중 국제결혼이 473건으로 3.0%에서 2004년 1만 4,000건중 1,181건으로 8.4%에서 2005년 1만 4,639건중 1,659건으로 11.3%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2006년에는 1만 6,178건중 2,070건으로 12.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에서 외국인 여성들과 결혼하는 비율은 2004년 31.7%에서 2005년 43.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설문조사에서 '잘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자가 32.1%로 가

장 많았으며, '본국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라고 응답한 자가 11.6% 등으로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적 여건을 보고 결혼을 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

결혼이민자에 의한 다문화가정은 현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행정기관의 배려의 부족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사회부적응, 혼혈아동에 대한 차별, 혈연주의와 혈통주의에 의한 잘못된 인식 등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과 그 자녀는 상당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에 있다.

단일민족 국가임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게 된 현실에 외국인 이주 여성들과 이들 여성들과의 결혼에 의해 출생한 자녀들의 의사소통 문제, 인권 문제, 폭력 그리고 학교내의 부적응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국가와 사회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계화와 국제화 시대라는 시대적 사상에 부응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내의 가정폭력의 실태를 살펴보면 일반 한국인의 부부폭력실태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7년 일반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40.3%임에 비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은 47.7%로 일반적인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7.4%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¹⁾ 이처럼 다문화가정내의 가정폭력은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는 실정에 와 있다.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도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적·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가정과 학교내에서 많은 문제를 나타내며, 특히 아동들의 집단 따돌림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집단 따돌림은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전체의 34.1%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외모가 달라서 4.9% 등으로 다문화가정내의 아동들은 또래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사회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향후 인종적 갈등 내지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개연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 상당수가 단기 종합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어 체류신분상의 불안으로 인하여 남편의 학대와 갈등에 대하여 가출이나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사법절차의 선택과 행정기관에 신고 특히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다.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7, 684쪽.

향후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우리사회에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이에 따른 경찰의 적절한 치안역할 정립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가정 내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폭력과 학대,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 및 사회 내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경찰의 능동적인 대책을 정립하여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의 변화중 하나인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주 여성과 그 자녀들의 인권침해와 사회보장을 위하여 경찰의 역할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정 증가에 의한 경찰의 치안확립으로 다문화가정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문화가정내의 자녀 등에 대한 안전한 학교생활과 사회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치안조직과 우리 경찰의 여건에 맞는 치안제도 등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경찰의 역할 방안 제시하고, 학교내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따돌림 및 폭력 예방 위한 경찰의 역할 제시하며,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방안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경찰의 치안역할을 정립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문제를 파악하여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치안확보에 기여하는 경찰의 치안역할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표가 있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다문화가정의 폭력 등 범죄 실태 분석

- 다문화가정의 가정내 폭력 등 실태
 - 다문화가정의 가정내 폭력 유형 파악

2)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분석을 하였다.

- 다문화가정내의 폭력 등 원인 분석
- 다문화가정에서의 외국인 여성과 아동 대상 등 대상유형 분석

○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 문제 분석

- 아동 집단내의 따돌림 및 폭행 등 실태 파악
- 따돌림 및 폭행 등의 원인 분석

나. 다문화가정 범죄 예방을 위한 법령 정비

○ 다문화가정에 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적정성 검토

-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적절성 검토
- 다문화가정내의 여성 피해자 등의 범죄 신고 체계의 접근 용이성 검토
- 범죄 피해에 대한 신고 결과 피드백 결과 실태 검토

다. 다문화가정내 범죄피해 및 범죄 가해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체계 검토

○ 지역경찰의 조직체계 검토³⁾

-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조직 문제점 검토
- 다문화가정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조직체계 검토

○ 지역경찰의 인력체계 검토

-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 전담 인력 배치 여부 검토
- 다문화가정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전문 인력 배치 가능성 검토

3) 여기서의 지역경찰은 실무상의 지구대와 파출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행정상 체계인 자치단체내에 있는 경찰로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라. 다문화가정의 범죄로부터 예방위한 경찰의 치안역할

○ 지역경찰의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 검토

- 지역경찰 역할강화로 범죄예방을 위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과 심방활동
- 범죄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범죄 수사 해결 활동 검토
- 지역경찰의 범죄예방 강화 활동으로 다문화가정내의 범죄 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가정 확립을 위한 경찰의 역할 정립

○ 지역경찰과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 유관 행정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범죄예방 활동 실태 분석
- 유관 행정기관과 협력(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검찰 등)하여 범죄예방 활동 강화 방안 정립

2. 연구방법

가. 문헌검토

- 사회복지학적인 측면의 다문화가정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안 검토
- 다문화가정의 실태 파악
- 다문화가정의 범죄 피해 및 가해 실태
-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 적응 실태 및 문제 파악
- 경찰의 지역사회 치안활동 검토
- 외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범죄에 대한 대응성 및 조직체계 등

나. 의견조사⁴⁾

○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 의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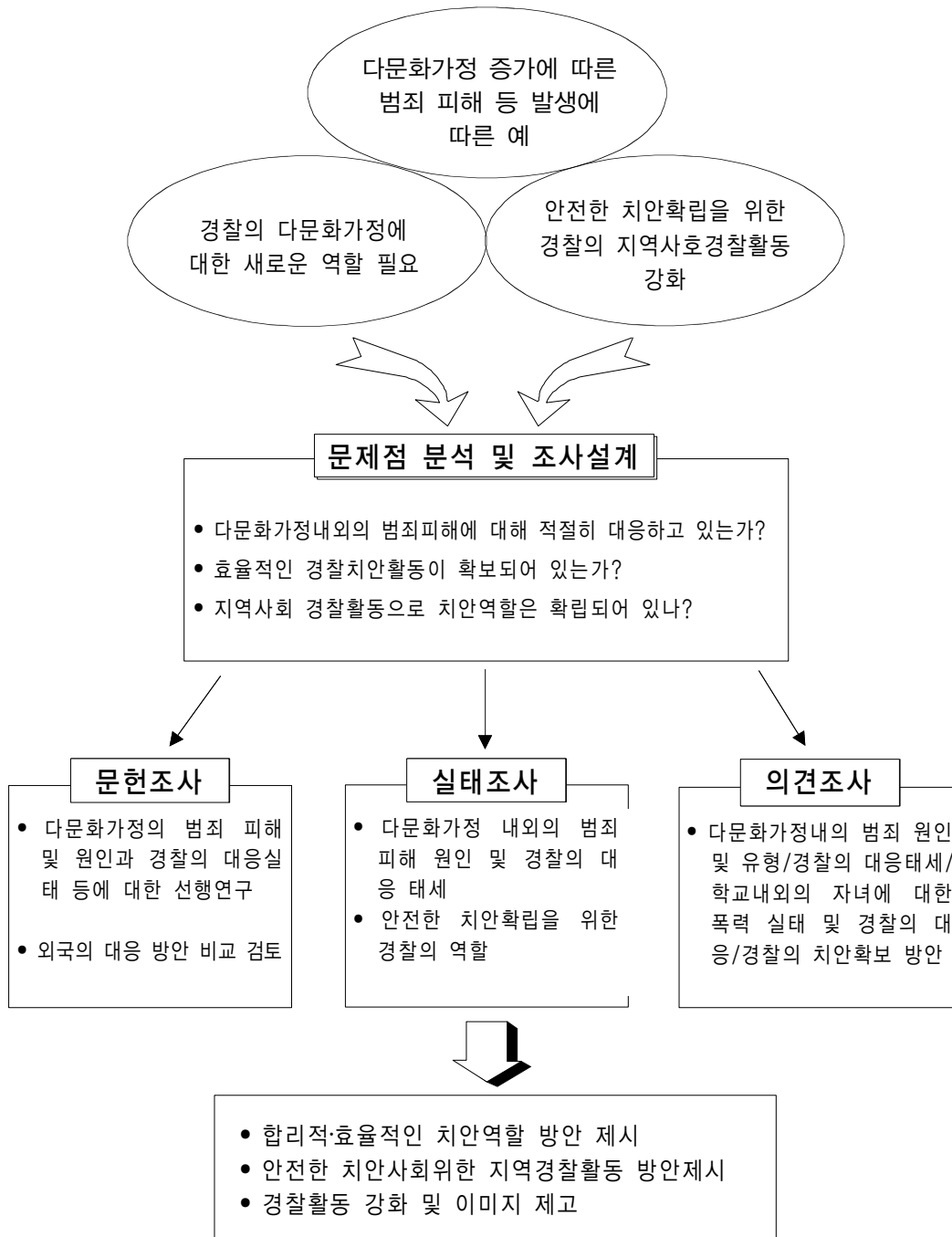
4)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과 경찰관에 대한 의견조사는 각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설문조사의 분석이 곤란한 응답지를 제외하여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은 61명, 경찰관은 74명에 대한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 대상 : 61명
- 방법 : 설문지법
- 내용 : 다문화가정의 폭력 및 범죄 실태
다문화가정의 경찰기관의 신고의 접근성
다문화가정의 신고후 처리절차 피드백
경찰의 치안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

○ 전문가 의견조사

- 대상 : 경찰관 74명(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 내용 : 다문화가정의 폭력 및 범죄 실태
다문화가정의 경찰기관의 신고의 접근성
다문화가정의 신고후 처리절차 피드백
경찰의 치안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

제3절 연구흐름도



제2장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다문화 사회의 개념

1. 다문화 사회의 의미

다문화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다문화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의 다양성에 대하여 세 가지 형태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⁵⁾ 첫 번째 형태는 사회구성원들이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나 어떤 특정한 생활분야에 대하여는 다른 신념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보편적인 문화를 수용하면서 특정한 부문에 대하여는 자신들의 독특한 신념과 생활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즉 게이나 레즈비언 및 최근의 인터넷세대로 비유되는 젊은 세대문화가 그 예이다. 둘째 형태는 주류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이러한 주류문화에 대하여 재구조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하지도 않고 독창적인 문화 공동체에 속해 있지도 않는 자들이다. 단지 기존의 주류문화를 어떻게 재구조화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로 환경운동가나 여성운동가 등이 이에 속한다. 세 번째 형태는 다른 신념과 습관을 가진 잘 조직화된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우로서 이민자공동체, 화교집단, 유대인 공동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늘날 다문화사회에 대한 주요 관심은 다른 신념과 습관을 가진 잘 조직화된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형태이다. 다문화사회의 의미는 둘 이상의 문화공동체가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정치철학적인 관점은 한 사회내 존재하는 하위 사회집단간 신념의 상대성을 똑같이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음식, 의복,

5) Parekh, Bhikhu, *Political Theory and the Multicultural Society*, 1999(고숙희,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사회 접근전략에 대한 태도”, 세명논총 제14집, 세명대학교, 2007, 8-9쪽, 재인용).

주거형태, 장례의식, 이념, 종교, 언어 등이 모든 집단에서 자유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다문화사회는 다민족사회와 복합인종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다민족사회는 기존의 문화적 실체들이 새로운 한 국가 속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복합인종사회의 문화다양성은 대규모 이민으로 형성된 인종집단으로 인해 형성된 집단을 말한다.

2.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접근 방식에 대한 모델⁷⁾

다문화 사회에 대하여 각 국가는 다문화 사회현상을 자국내의 문화로 흡수하는 동화적인 방식과 다문화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다원적인 방식, 그리고 다문화에 대하여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배척하는 차별적인 접근 방식으로 나누고 있다.

가. 동화주의(Assimilationist Model)

동화주의는 이민자들이 주류집단으로 흡수되어 주류집단과 동일하게 변해갈 것으로 기대되는 일방적인 통합정책을 말한다. 사회내의 잠재적 소수집단이나 이민자들이 국민이라는 다수집단 속에 융해되며, 문화적 적응이라는 단선적 과정의 결과 다수집단과 분리할 수 없게 되는 현상으로 단일문화주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타국에 이민 온 이민자들은 자기들만의 문화적 특징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개인집단 및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은밀히 보존하는데 그치며, 다수에 의해 결정된 주류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태를 보인다. 새로이 타국의 국적을 받아들이는 경우 그 국적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며, 새로운 국적의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화는 이민자 집단이 비 이민자들과 비슷한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 공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동화주의는 동화과정에서 이주민이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 사회와 이주민이 모두 새로운 현상에 적응해야 하는 양방향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⁸⁾ 이러한

6) 박이문, “다문화주의”, 철학과현실, 봄호, 2002, 22-38쪽.

7) 고숙희,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사회 접근전략에 대한 태도”, 9-11쪽을 재정리 하였다.

모델이 프랑스식 모델로 문화적·민족적·종교적 다양성의 문제가 배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개인은 민족적, 인종적 차이에 관계없이 신앙이나 문화적 관습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동화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시민권을 쉽게 부여하며, 자기 영토내에서 출생한 자들에 대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는 속지주의에 의해 자국내에서 출생한 자를 자국내에 빨리 동화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여 진다.

동화주의를 취하고 있는 나라로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등이며, 문화적 단일성을 중요시 하는 나라들이 이에 속한다.

나. 다원주의(Multicultural or Pluralist Model)

다원주의 모델에서는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민으로 생겨난 소수민족집단이나 원주민 집단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이 인정된다. 사회를 서로 경쟁관계로 보거나 갈등관계로 보아 민족적, 문화적 공동체의 공존의 장으로 보고 있다. 다원주의 하에서는 각 공동체는 자기 고유문화가 사회전체에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우선하여 생각하고 있다. 공동체 문화의 다양성이 공적인 영역을 침범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경쟁관계로 보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소수 집단에 대한 문화적 특징을 보존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 등을 하고 있지는 않다. 즉 사회는 경쟁에 의해 존속되어 가는 것으로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스스로 사회내 자기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소수집단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경쟁에 사회문화를 맡겨 놓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원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로는 캐나다, 호주,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 이주민이 만든 국가로서 상호경쟁을 가장 중요시하는 나라들이 이에 속한다.

8) Martikainen, Tuomas, Relation, *Immigrants and Integration*, AMID Working Paper Series, 2005, p.43.

다. 차별적 포섭/배제(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새로운 이민자들이 기존의 주류사회에 통합되어 주류문화로 편입되는 것을 일정 부분을 허용하고 일정부분은 차단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새로운 이주민에 대하여 사회 시장영역에는 참여를 시키나 국민으로서 누리는 개인적 공권 즉 복지권 등에 대하여는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 포섭/배제 형태는 주류문화가 다수 폐쇄적인 집단의 형태를 가지는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특히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혈통의 순수함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형태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문화적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로서 자기 문화의 보존을 강하게 띠고 있다.

차별적 포섭/배제의 나라로는 우리나라가 이에 속하며, 일본,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홍콩, 대만, 중동 등이 이에 속한다.

제2절 다문화주의

1. 다문화주의의 논의

가. 문화적 관점

다문화주의는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달리 상이한 내용을 가진다. 다문화주의에 대하여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가지는가에 따라 국가정책 등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는 나라가 이주민에 의해 세워진 나라인지 아니면 식민통치 기간 중 강제적인 분리를 경험했던 다인종 국가이냐에 따라 그 다문화주의에 대한 목적이 달라진다.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체성, 개인과 집단과의 관계, 사적·공적인 영역의 관계 그리고 문화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다. 사람들의 정체성은 윤리적인 정서적으로 공동체에 애착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하며, 자유주의적 이상은 사회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며, 공적영역과 사적인 영역구분이 모호하며 문화적인 특수성과 차이는 사

적인 영역으로 보았다. 이는 여성들과 소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낳았으며, 문화는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소수 집단에 대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화, 종교 등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⁹⁾

그러나 여성운동가, 좌파 사상가 그리고 인권운동가 들은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다문화주의를 접근하고 있다. 문화는 한 동질적인 사회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관된 총체로 세대간 전수되며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회적 행동을 한정한다. 이러한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의 문화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다문화주의는 집단간의 의례적 문화관습, 예의범절 등을 중심으로 고정되고 폐쇄적인 정체성을 강조함으로 오히려 새로운 문화에 대해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인적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다문화주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정책으로 소수자 집단에 대한 국가적인 관리차원에 머무를 수 있다. 넷째 다문화주의는 소수와 다수를 분리하여 소수를 다수에 편입시켜 다수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주의에 대하여 일반적인 견해와 인권운동가들의 측면은 약간 상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이들 모두 다문화에 대하여 문화적 접근성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것이다. 문화는 고정적인 것이 아닌 변화하고 새로이 창조되므로 어떤 집단들에 대하여도 침투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문화는 또한 의례적인 것들로 구성되며, 사회적 교환 그리고 각 집단들의 구성원이 수행하므로 다양한 사회적 문화구성원들에 대한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할 때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집단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이에 상응한 문화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9) 김영옥,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7, 138-139쪽.

나. 분배의 관점

다문화주의는 그동안 주류가 된 다수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자들을 다수집단에 흡수시키는 방안에서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그동안 다수집단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분배의 관점 즉 사회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 사회의 경제구조에 대하여 위계를 인정하여, 경제적 변화에 대응한 경제적 박탈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주의는 소득의 재분배, 노동 분업의 재편성, 투자 결정의 규제 등 경제적 구조를 재편성할 것이 요구된다.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분배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단간의 계급격차에 의한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분배를 바탕으로 이들 소수집단에 대하여 갈등을 해소하려는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프레이저(Fraser)는 재분배에 대하여 그룹의 문화적 위상이 바뀌면 그 결과로 그룹구성원들이 배분받게 되는 사회경제적 몫이 향상된다. 계급, 성별, 인종, 섹슈얼리티 등 4개의 유형에서 계급은 가장 재분배에 관련되어 있다.¹⁰⁾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이들 분배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계급에서 발생하는 소수집단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제도화된 장애물을 해체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구성원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다문화주의는 국가의 정치·경제적 생존과 재분배를 위해 이민집단을 받아들여야 했던 국민국가의 통치방식이나 기술의 결과로 소수집단의 방식으로 등장했다. 이민자의 경우 국적취득과 함께 주류국가의 시스템에 통합되어 가며, 이러한 통합정도는 각 나라의 이민정책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문화주의에서 이민자들은 주류사회와 다른 종족적 배경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류사회가 통합시키려는 국민 만들기에 대하여 완전히 저항할 수 없으나 통합 등의 조건에 대하여 재협상은 시도할 수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이민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주의는 통합의

10) Fraser, Nancy·Honneth, Axel,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translated by Joel Golb, James Ingram, Christiane Wile. London·New York, pp.1-100(김영옥, 앞의 논문, 141-145쪽, 재인용).

조건을 재협상하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 볼 수 있다. 협상은 통합의 과정이 다수자 집단들에 부여되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조건 즉 존중, 인정, 편의들이 소수집단들에 대하여도 동등한 권리인 시민권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귀결된다.¹¹⁾ 이주한 소수집단들은 처음에는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민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다가 이후 참여적 주체인 시민으로서의 성원권을 얻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하나의 주류집단에 흡수되거나 또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가능하다.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소수집단을 그 자체로 인정하기 위해서 그들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주류집단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절 한국사회내의 다문화

1. 한국사회 다문화 현상의 배경

20세기부터 세계는 국제화·세계화라는 가치를 내걸고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다. 급격한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은 이러한 세계화를 더욱 가속화시켜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 더 이상 단일성을 가진 국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세계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세계화는 선택이 아닌 세계의 흐름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명제로 변화되었다. 지난 IMF사태는 우리 사회가 이제 폐쇄된 국가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반영하는 사례였다.

마틴(Martin)에 따르면 출생지이거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닌 타국에 거주하는 자가 세계적으로 1990년에 1억 2천명이었다가 2000년에 1억 6천만명으로 10년 사이에 약 30%가 증가하였다. 주로 이러한 이주민들은 저개발국에서 개발국과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의 경우 국제이주자를 영구자로 받아들이는 주요 5개국으로서 이들 국가는 연간 120만명의 이주자

11) 시민과 국민에 대하여는 이를 구별하고 있으며, 시민의 경우는 국가라는 틀에서 상대적으로 독립된 자유로운 지위를 가지는 반면 국민은 국가라는 틀 안에서 국가에 종속된 수동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김영옥, 앞의 논문, 145-148쪽 재정리.

를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외국 이주민들 받아들이는 수가 1995년 27만명에서 2005년 74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8월에 1백만명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7년 5월 기준으로 72만명이 넘었다.¹²⁾ 이는 우리사회가 더 이상 단일사회가 아닌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가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즉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다. 외적인 요인으로는 교통·통신의 발달, 자유시장에 의한 재정자원의 세계화, 여행의 자유에 따른 거주이전의 선택 폭 확대, 언어의 세계화, 문화의 공유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내적인 요인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 농촌총각들과의 결혼기피에 따른 농촌총각의 증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등을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과학이나 의료기술, 스포츠, 오락, 영화산업 등의 사회적 활동영역은 점차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 등에 의해 세계인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다문화는 세계화의 전개과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다문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더 이상 보호주의적인 배타적 성향을 앞세울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¹³⁾

특히 우리사회에서의 다문화의 직접적인 배경이 된 것은 산업화와 근대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와 힘든 농촌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에 의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인구 등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발생시켰으며, 교육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다. 이러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우리사회에 다문화라는 새로운 변화를 양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2. 한국사회 다문화의 특징과 문제점

가. 특징

한국사회는 다문화에 대하여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즉 미국이나 캐

12) 김홍운·김두정,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인문학연구 제34권3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156-157쪽 재정리.

13) 강신임,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교육의 과제”, 대학원연구논집 제28집, 동국대학교, 1998, 207쪽.

나다 등의 경우는 이주민들이 그 나라에 정착하여 새로운 소수집단들을 받아들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영국이나 독일 및 프랑스의 경우는 유럽이라는 권역내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문화를 형성하다가 노동자의 필요 등으로 인하여 이질적인 문화와 종교를 유입하는 형태의 다문화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우리사회 다문화는 이들 나라와 달리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노동력에 의한 이주민의 증가보다는 결혼이라는 목표를 위하여 소수집단이 유입되어 이질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가기 시작한다는 것과 또한 동일 민족이었으나 분단의 현상에 의해 너무나 이질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가고 있는 북한 이주민의 집단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거 주한미군의 주둔에 의해 다문화의 틀을 가져가는 것 같았으나 현재는 중국인과 동남아시아인들의 급격한 유입으로 기타 외국계 즉 주한미군 등의 수가 줄어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대신 영어 열풍에 따라 영어권에 있던 사람들의 유입은 영어문화의 특색을 가지는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도시중심으로 모든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어 외국인의 이주자들도 대도시인 서울, 경기, 인천에 약 64%가 집중되어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이 1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16곳으로 이는 2006년의 여덟 곳에 비해 두 배 증가하였다. 또한 외국인 이주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외국인 집단촌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도시가 안산시의 경우로 안산시의 인구는 2008년 11월 기준으로 734,713명이나 이중 외국인이 29,673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높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1) 외국인 이주 노동자

산업화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에 따라 출산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의 감소현상을 낳았다. 또한 육체적인 힘든 노동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인한 노동력 필요에 의해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1990년대초 5만여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8년 9월 기준으로 556,746명으로 10배가 증가하였다. 특히 산업연수생 제도와 2004년 발효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의 외국인력 고용이 합법화되면서 국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¹⁴⁾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시장이 많은 대도시에서 편중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에는 거주지역이 생겨나고 주변상권이 이들 중심으로 형성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국제결혼 이민자

도시화에 따라 젊은 노동력과 인구의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현상은 1980년대에 들어 급격히 확산되어 현재는 농촌지역에 청년인구가 전무한 실정에 있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농촌의 노동력 상실과 함께 남아 있는 농촌총각들의 심각한 결혼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시작된 외국인 즉 중국의 조선족과의 결혼에서 시작된 국제결혼은 이제 베트남계 등 동남아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같은 국가에까지 이르고 있다. 국제결혼은 2003년 25,658건이 접수되어 전체 혼인건수 304,932건의 8.4%를 차지했고, 2006년에는 총 혼인건수 332,752건 중 39,690건으로 11.9%를 차지하여 전체의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3) 새터민¹⁵⁾

새터민이라는 용어는 2004년 통일부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 '탈북자'들에 대한 대체 용어이다. 북한 주민의 대규모 이탈이 본격화된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의 이탈 원인은 식량난이며, 2000년 이후에는 경제난과 함께 외부정보의 획득과 자유, 희망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의 실현 등으로 인하여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탈북은 제3국을 통한 탈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가족단위 입국자가 전체 입국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에 입국한 가족이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가족을 재차 데려오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새터민들은 북한 체제에 살다가 남한으로 이주한 경우로 이들은 초기에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속에서 자본주의로의 급격한 변화는 이들 문화에 대한 아노미현상을 불러오고, 부적응이라는 양상을 낳고 있다.

14) 김홍운·김두정,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158쪽.

15) 앞의 글, 164-165 쪽 재인용.

나. 문제점

1) 외국인 이주 노동자

노동력의 필요에 의하여 산업체 근로자 등으로 유입된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환경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을 기피하는 곳에서 열악한 작업환경하에서 노동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및 불법채류라는 신분 등으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출입국 경로에 관한 문제, 둘째 주거환경 및 경제생활에 관한 문제, 셋째 직장 내 문화적 갈등에 관한 문제, 넷째 사회내 차별에 관한 문제로서 종교나 피부색에 의한 차별, 언어 장애와 문화갈등, 다섯째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이다.¹⁶⁾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는 헌법 제6조 제2항 및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제30조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되고 해당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기초로 하여 교육의 권리를 받는다고 하나, 실제상에서는 우리는 위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 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법규로서 직접적인 조약으로서의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헌법상의 근거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국제관행법으로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국가에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는 학교당국의 기피와 사회의 냉대 등에 의하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 국제결혼 이민자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수십년간 다른 사회와 문화를 형성한 인격체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국제결혼한 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습관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배려하여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 그동안

16) 앞의 글, 159쪽.

이질적인 환경속에서 생활하여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국제결혼 한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가족 공동체내에 이중문화가 존재함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갈등은 가족간의 불협화음을 낳아 가정자체를 불안정하게 한다. 둘째,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언어의 소통이 곤란하여 감정의 변화를 표현할 수 없고,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자기를 이해시키려는 것이 부족하다. 셋째, 상호 다른 목적하에 결혼을 함으로 서로간의 배려가 부족하여 가정불화를 발생시키며, 돈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 것 등은 상호간의 신뢰감이 낮아 가정폭력과 불화로 이어져 이혼을 낳고 있다. 넷째, 자녀 교육의 문제로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습관에 의해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혼란을 겪게 된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자녀교육이 주로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어머니가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자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언어의 장벽과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한 대인관계 기피현상을 낳고 있다. 대인관계의 기피현상은 우리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3) 새터민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한국사회에 대한 동경으로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오는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다. 새터민의 급증은 한국사회내의 문화적 적응 및 지역 사회내에서의 갈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¹⁸⁾

새터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된 직장과 생활안정이다. 초기 새터민들의 경우는 한국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안정된 직장과 정착금을 지원하여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새터민의 급증은 이들에 대한 배려가 과거처럼 충실히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취업기회 제공 부족하나마 일정금액의 정착금을 주어 한국정부는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새터민들의 적응실패는 직장을 잃게 되어 생활의 근간을 흔들리게 하고 있다. 새터민들은 직장을 구하는 문제와 직

17) 앞의 글, 162-164쪽.

18) 앞의 글, 165쪽.

장생활에서의 갈등현상, 그리고 한국사회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부족에 의한 갈등을 낳고 있다.

또한 새터민의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첫째 북한의 교육시스템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주함으로써 나타나는 교육공백의 현상을 메우기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교우관계의 곤란이다. 새터민의 아동들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이해부족은 새터민 아동들이 소외감과 위축감을 가져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게 한다. 셋째 새터민 자녀들에 대한 학년별 배정에 있어 연령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부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제4절 외국의 다문화주의

1. 미국의 다문화주의

가. 다문화주의의 개념

미국은 이주민들이 구성한 집단으로 형성된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문화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울려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미국 문화의 핵심적 요소에 대하여 10개로 집약하면 개인주의, 자유의 예찬, 평등주의, 법치주의, 다문화주의, 퓨리턴정신, 개척정신, 실용주의, 과학·기술의 신뢰, 미래지향성 등이다.¹⁹⁾ 미국의 문화는 다문화로서 세계화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면서 성장하였다.

미국의 다문화를 “Melting Pot Theory”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가 혼재되어 각 성격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 성격을 유지하면서 혼재하는 문화라는 의미로 “Salad Theor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²⁰⁾ 이처럼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각 문화의 이질성을 살리면서 국가의 틀 속에 커다란 하나의 문화로 동화시켜 각 소수집단

19) 김형인, “미국의 정체성 10가지 코드로 미국을 말한다”, 살림, 2003.

20) 손현숙·박세정,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이공대학 논문집 제36집, 2007, 4쪽.

의 문화를 인정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가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각 소수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이질감을 집단 내에서 가지고 있으며, 주류사회에서도 이들 소수집단들의 문화를 긍정하면서 하나의 커다란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나. 다문화주의 특징

세계화는 1980년대 이후 정보통신의 혁명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독일의 통독은 세계질서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의 문화로 전환시키게 되었으며, 국제정치와 경제에 대두된 신질서로 국가간의 거리가 좁아지는 현상으로 넓게는 국적이 다른 사람이 타국가에 상호 왕래하여 문화를 교류하여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세계화라는 용어로 표현하게 되었다.²¹⁾

미국의 세계화는 세계 2차대전 이후에 많은 미국인들이 외국에 파견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충돌하면서 자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타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인권주의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세계 2차대전을 겪으면서 새롭게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리더십은 1차대전과 2차대전을 겪으면서 세계속에서 미국의 지위가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은 세계의 중심적인 위치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으며, 특히 세계대전에 참전한 흑인들의 지위가 향상되게 되었다. 즉 흑인과 백인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자유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기치아래 하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흑인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다.

미국의 세계화는 2차대전이라는 변화를 거치면서 인종차별적인 질서와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미국 대법원판결인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회 재판(Brown v. Board of Education)에서 흑인들에 대하여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하는 것은 위헌이라

21) 김형인, "미국의 다문화주의의 향방: 세계화와 9·11의 여파", 국제지역연구 제11권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177쪽.

는 판결에 의해 흑인들은 교육에서의 평등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 판결은 대법원장이었던 워렌(Earl Warren)이 개혁주의자여서 이러한 판결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세계적인 리더십을 담당하도록 손짓하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부응하도록 한 것이다.²²⁾ 또한 그동안 깊이 가졌던 소수집단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시정하여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소수집단이 하나의 문화로서 미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한 판결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이와 같은 세계화의 물결에 부응하고, 인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대하여 타국의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일어난 인권운동은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미국의 인종, 계층, 성 차별에 대한 차별철폐는 유럽으로 확산되어 세계사에 거스를 수 없는 문화적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2) 자유무역주의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세계화라는 기치아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아래 경제에서도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세계에 이를 확산시키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소련의 붕괴와 정보통신의 혁명 등은 국제정치에 새로운 질서를 태동하게 했다. 냉전체제의 붕괴는 미국에 새로운 정치적·경제적 국제질서를 정립해야 할 긴박성을 낳았으며, 이에 의해 미국은 자유무역주의 체제를 전세계에 확산해 가기 시작하였다. 지역무역주의를 위하여 무역과 관세를 위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f Trade and Tariff)로 나타났으며, 그 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발전하게 되었다.²³⁾

미국은 세계질서를 개편하기 위하여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세계 곳곳에 수립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유무역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상당한 저항을 받아왔으나 현재는 미국의 강요된 노력으로 인하여 서서히 정착을 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 자국을 개방화하여 세계질서체제를 새로이 개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을 강요하였으며, 미국의 자유무역주의에 따른 문화도 함께 타국에 유입되게 되었다. 미국은 미국중심의 세계경제체제를 확립하면서 다양한 미국문화를 세계 곳곳에 전파해 가고 있

22) 앞의 글, 178-179쪽.

23) 앞의 글, 181-182쪽.

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문화가 각국의 고유문화를 침략·말살하는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우려로 반미 정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다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에 따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미국중심의 경제질서 및 문화체제를 전세계에 확산시키고 있다.

3) 애국주의

미국은 하나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된 것은 2001년 9월 11일 테러이후에 나타난 애국주의다. 미국은 그동안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애국심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테러의 발생에 의해 미국은 하나라는 기치를 내걸고 더욱 결속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문화간의 갈등현상을 가져오다가 9·11테러이후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자는 운동이 확산되었다. 또한 미국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흑·백의 인종간을 뛰어넘어 애국심을 유발시켜 하나의 미국을 보여주게 되었다.

국가적 재앙 앞에서 국민들은 애국심으로 단결력을 보여주었으며, 정당들도 초당적으로 강력한 지지로 뭉치게 되었다. 다문화주의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국가적 재앙 앞에서 하나라는 결속력을 가지고 자국민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켜 소수집단 등에 대하여도 하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다. 다문화주의의 변화

미국의 다문화주의는 미국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양상을 가졌다. 그러나 애국주의에 의한 이라크전과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군사작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피해와 국가의 경제적 손실에 따라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에 대한 국민적 지지력 상실과 경제사정의 악화는 더 이상 미국이 세계중심에서 세계화를 지도하는데 리더십의 부재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미국내의 분열은 문화전쟁으로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미국 문화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결은 이민정책과 총기대결은 여러 가지 쟁점으로 확산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교육과 예술로 파급되어 문화전쟁(Culture Wars)으로 변화하게 되었

다. 문화전쟁은 선거와 맞물려 더욱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하였다. 에런 블룸(Allan Bloom)이 ‘미국 정신의 종말(Closing of the American Mind)’이라는 저서에서 젊은 이들의 시민의식의 결여, 취미와 사유의 저속화 등이 부적절한 대학교육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과거의 고전적인 문화대신에 소수민족의 특수한 경험 내지는 저변층의 일상적 이야기를 교육하는 캠퍼스 문화가 미디어와 더불어 젊은이들의 정신적 공허를 불러온다고 하여 문화전쟁의 시작된 계기로 보고 있다.²⁴⁾ 이러한 문화전쟁은 소수집단의 문화를 교육하고 이를 사회에 받아들이면서 문화의 저속화가 초래되었다고 하여 다문화주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전쟁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다문화주의가 미국의 전통이 되었다는 것은 9·11이후 무슬림이나 소수집단 등이 미국 내에서 생활한다는 것에서 확실해 진다. 특히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가 당선되는 변화를 가져온 것에서 확실히 증명된다. 미국은 이제 다문화주의가 더 이상 쟁점으로 떠오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주의라는 공식이 아닌 다양한 문화가 이제 미국사회의 구성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2. 이탈리아의 다문화주의

가. 다문화주의의 개념

이탈리아는 1970년대 이후 노동력 필요에 의해 이주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 전까지 이탈리아인이 미주대륙과 호주 등지로 이주하는 입장이었으나 산업화에 의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 이탈리아로 이주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주변 국가들인 동유럽에서 공산권이 붕괴되어 잉여인력이 시장수요가 높은 이탈리아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다문화주의는 산업화에 의한 이탈리아 노동자들의 소비가 초래되어 힘든 노동일에 종사하지 않으려는 기피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 이탈리아인의 이동은 주로 내부적 이동이나 타 선진국으로의 이주였으나 그

24) 앞의 글, 187쪽.

양상이 산업화의 급속한 성장에 의해 새로운 주변국의 사람들이 이주하는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다문화는 이주노동자들에 의한 이주집단들의 문화가 이탈리아에 유입되면서 다문화주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이탈리아내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흡수통합을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문화, 종교 및 인종적 차이를 인정하여 주류사회로 진출을 부정하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내에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내지 거부적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²⁵⁾

이탈리아의 다문화주의는 배타성을 가지고 소수집단을 인정하는 것으로 상호간의 차이를 인정하여 주류사회에 편입시키려는 태도가 부족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이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와 종교 등을 가지고 이탈리아 사회에서 단순히 생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다문화주의의 특징

1) 여성이민자의 증가

이탈리아 이민에서 특이할 점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하여 여성 이민자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민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피혁공장이나 의류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남성보다 여성노동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공장에서 노동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으며 여성이민자의 증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00년 여성이민자의 비율은 45.3%로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증가는 노동력 확보 때문이며, 노동력에 필요에 의하여 전체 이민자중 노동사용이 전체의 67.1%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이주하는 경우 24.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지중해식 이민모델

노동수요에 있어서 신규유입국이나 기존 이민 수용국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수용하는

25) 김시홍, "이탈리아의 이민과 다문화주의", 국제지역연구 제9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66쪽.

노동시장에 의한 이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직업구조 변화나 이민노동자의 역할과 지위 선정에서 지중해 국가들과 동일한 형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²⁶⁾ 이러한 지중해식 이민 모델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탈리아의 특징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계절적 이민의 경우로 이탈리아의 경우도 남부지방의 경우는 농작물 수확기에 남성노동력이 필요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이민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3차 산업의 노동에 이민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인서비스 즉 가사노동이나 노인보조 및 다양한서비스 분야에 많은 고용이 이루어졌다. 셋째 이민자들이 사회정책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다문화주의는 이민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등을 인정하느냐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현재 불법 이민자들에 대하여 합법적 이민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특히 지중해 연안국가들의 이주민들의 유입 등에 대하여는 같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들을 인정하는 분위기에 있다.

다. 다문화주의의 변화²⁷⁾

이탈리아는 이민정책에 대하여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민에 대하여 그동안 가졌던 차별적인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6년 법률 제943호에 의해 외국인 노동자와 이탈리아 노동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선언이었다. 이러한 선언은 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이 마련되어 하나의 이민집단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한다는 것은 소수집단에 대하여 주류사회로의 편입을 허용하는 것이며, 다문화주의를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에는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에서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1990년 마르텔리(Martelli)법이 제정되어 그동안 이민문제가 가지고 있던 내용을 해소하는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다. 동법에서는 외국 이주민에 대하여 의료혜택도 포함시켰으며, 이민자들을 위한 수용기금 등이 마련 될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26) 앞의 글, 56-57쪽.

27) 앞의 글, 61-64쪽.

동법은 외국인 수용구조의 실천을 위하여 지방기관을 설립하는 기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정치적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치적 난민 등에 대하여 지리적 한계인 사회주의 국가에서 오는 자들에 대해서만 난민자격을 주던 것을 개방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그동안 고용노동자에 국한되었던 것을 노점상 등을 하는 이민자들에 대하여도 그들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이탈리아는 단기간에 다문화에 대하여 개방화하여 그들 문화를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가고 있다.

제3장 다문화가정의 실태 분석

제1절 다문화가정의 의의

1.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의

현재 우리사회는 세계화의 추세와 농촌층각의 국제결혼이라는 현상하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혼재되어 문화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에 의해 한국 사회는 이제 다문화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다문화는 여러 인종의 여러 문화라는 뜻이며 이는 미국 다문화 사회에서 유래되었다고 보고 있다.²⁸⁾ 이러한 다문화의 표현은 미국의 사회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문화를 혼재된 문화(Mixed Culture) 즉 다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자들이 모여 만든 사회의 문화라는 뜻으로 사용하며, 이 이론을 “Melting Pot Theory”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가 혼재되어 각 성격을 변질시키지 않고 그 성격을 유지하면서 혼재하는 문화라는 의미로 “Salad Theory”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²⁹⁾

우리의 경우는 아직 미국과 같이 다문화가 그 성격을 유지한 형태로 있기 보다는 다문화 성격을 잃고 우리 문화에 혼재되고 있는 “Melting Pot Theory”라는 용어가 더 적절히 맞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의 개념은 현재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사회에서의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개방화의 시대에 와있다. 따라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혼재되어 사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정의는 미국의 이론에서 나온 “Melting Pot Theory”나 “Salad Theory”의 어느 하나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미국사회는 이민자 집단이 모여 구성되어 타국의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있어 타문화가 스며들어 새로운 문화나 기존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8) 손현숙·박세정,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3-4쪽.

29) 앞의 글, 4쪽.

우리사회는 유교주의적 사상의 영향하에 외세를 배척하고,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기초아래 타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타문화가 우리사회에 들어와 우리문화에 동화되도록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의 다문화는 과거 외국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문화만을 고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기 보다는 배척하는 성격을 가져왔다. 이러한 성향은 우리문화가 하나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세계화에는 역행하는 현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오면서 다양한 타국의 문화를 서서히 인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다문화는 타국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에 맞게끔 그들 문화를 전환시키려고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의 다문화는 타국의 문화를 동등시하는 것이 아닌 배척하고 이를 우리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다문화가정의 정의

우리와 다른 타국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나 외국인과 결혼하여 우리나라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을 다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가정으로 분류하여 다문화가정이라 할 수 있다.³⁰⁾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문화적 특성을 가진 자를 배우자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 주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외국인 특히 중국·동남아 등지의 외국인 여성과 농촌총각의 결혼에 의한 가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인종적 특성을 가진 자(즉 남녀배우자)와 결혼한 가정을 모두 포함시켜 다문화가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는 단일 민족, 단일 혈통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사회에서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타문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등의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문화적 차별에 의한 소수집단들의 차별에 대한 편견으로 계층간의 불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안요소로 발전할

30)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2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2007년 초부터 부르는 호칭이다.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다문화가정은 외국인과 함께 한국내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세대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가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들 다문화가정의 특징은 한국사회내에서 주류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소수집단으로 구성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음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끼리 집단을 이루어 하나의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여 가고 타 집단을 배척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2절 다문화가정의 현황

1. 국제결혼의 현황

가. 국제결혼 실태

우리사회의 국제결혼 현황은 주로 외국인 아내와 결혼하는 양상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이 2003년 이후에는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총186,758명으로 2005년까지가 159,942명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이 6.3%를 넘었으며, 특히 2005년에는 9.9%로 10%대로 진입하고 있다. 또한 전체적인 국제결혼의 구성비율을 보면 2004년부터 전체 결혼건수의 11.4%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는 가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04년부터 전체 결혼한 한국인 부부중 열쌍중 한쌍은 외국인과 결혼하여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비율은 전체결혼의 5.1%이며, 외국인 아내 수는 186,758명으로 이들이 낳은 자녀까지 하면 그 수는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3.1〉 국제결혼 추세 및 인구 구성 전망(10년)

(단위: 건, %)

연도	총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결혼건수	구성비율
1997	388,591	12,448	3.2	9,266	2.4	3,182	0.8
1998	375,616	12,188	3.2	8,054	2.1	4,134	1.1
1999	362,673	10,570	2.9	5,775	1.6	4,795	1.3
2000	334,030	12,319	3.7	7,304	2.2	5,015	1.5
2001	320,063	15,234	4.8	10,006	3.1	5,228	1.6
2002	306,573	15,913	5.2	11,017	3.6	4,896	1.6
2003	304,932	25,658	8.4	19,214	6.3	6,444	2.1
2004	310,944	35,447	11.4	25,594	8.2	9,853	3.2
2005	316,375	43,121	13.6	31,180	9.9	11,941	3.8
2006	332,752	39,690	11.9	30,208	9.1	9,482	2.8
2007	345,592	38,491	11.1	29,140	8.4	9,351	2.7
1997 ~2007	3,698,141	261,079	7.1	186,758	5.1	74,321	2.0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2007.

나. 국제결혼의 국적별 순위

국제결혼의 국적별 순위를 보면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은 중국이 타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인과 결혼한 수는 2007년 14,52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으로 2007년 6,611명으로 2004년 2,462명에 비하여 약 26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중에서 몽골의 경우를 보면 2004년에 504명에서 2007년 745명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그 상대국이 주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의 한국 산업체 요원로서의 입국과 이주 노동자 등의 비율 증가에 따라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3년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은 총 6,444명에서 2004년 9,853명으로 52.9%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7년의 경우 9,351명으로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중국인 남

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2003년 1,199명에서 2004년 3,621명으로 202%의 증가율로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일본남성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이 2007년 3,68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제 우리사회도 2000년 들어 급속한 개방화의 물결과 경제성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제결혼 건수가 13%에 달하고 있으며, 단순히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뿐만 아니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다.

〈표 3.2〉 국제결혼의 국적별 순위³¹⁾

구분	한국남성과 이주여성				한국여성과 이주남성			
	여성국적	2003	2004	2007	남성국적	2003	2004	2007
	계	19,214	25,594	29,140	계	6,444	9,853	9,351
1	중국	13,373	18,527	14,526	중국	1,199	3,621	2,489
2	베트남	1,403	2,462	6,611	일본	2,613	3,378	3,684
3	캄보디아	-	-	1,804	프랑스	-	-	115
3	일본	1,242	1,224	1,665	미국	1,237	1,348	1,344
4	필리핀	944	964	1,531	캐나다	223	230	376
5	몽골	318	504	745	방글라데시	158	186	-
6	미국	323	344	377	호주	108	136	159
7	태국	346	326	531	영국	88	120	126
8	러시아	297	318	-	독일	93	110	-
9	우즈벡	329	247	-	파키스탄	130	103	134
10	기타	639	678	1,350	기타	595	621	924

<http://www.kosis.kr>.

31) 통계청, 2005(손현숙·박세정,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쪽의 재인용)
<http://www.kosis.kr>.

2. 국제결혼의 이혼추세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결혼가정이 파탄나는 이혼가정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결혼가정내 이혼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3〉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단위: 건,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이혼 건수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 외국인과의 총 이혼	1,866	2,164	3,400	4,278	6,280	8,828
-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3	1.3	2.4	3.3	5.0	7.1
- 증 감	-	298	1,236	878	2,002	2,548
- 증 감 륜	-	16.0	57.1	25.8	46.8	40.6
■ 한국인 남편+외국인 처	401	583	1,611	2,444	4,010	5,794
- 증 감 륜	-	45.4	176.3	51.7	64.1	44.5
■ 한국인 처+외국인 남편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 증 감 륜	-	7.9	13.2	2.5	23.8	33.7

통계청, 국제결혼 이혼통계, 2007.

외국인과의 총 이혼 건수는 2002년 1,866건에서 2007년 8,828건으로 무려 7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에 따른 이혼은 2002년 401건에서 2007년 5,794건으로 10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에 따른 이혼은 2002년 1,465건에서 2007년 3,034건으로 약 3배의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부부 상호간의 문화적 이질감과 상호배려의 부족 등에 의해 이혼이라는 파탄으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실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거주실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농촌 지역과 산업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³²⁾

〈표 3.4〉 외국인 주민 실태:2007년 4월 기준

(단위:명)

구분	주민등록 인구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국제결혼 가정자녀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자	기타 외국인	혼인 귀화자	기타사유로 국적취득자	
		계	계	계	계	계	
합계	49,092,419	259,805	87,964	276,608	38,991	15,060	44,258
서울	10,200,096	34,288	23,413	122,223	12,484	9,704	5,305
부산	3,604,967	5,842	4,416	13,924	1,926	214	2,269
대구	2,496,550	2,569	2,756	12,163	1,053	171	2,019
인천	2,638,422	18,913	4,927	13,808	2,562	570	2,313
광주	1,410,660	2,169	1,823	4,836	674	51	1,231
대전	1,471,901	4,091	1,909	4,499	633	88	824
울산	1,093,722	5,292	1,477	3,675	576	130	884
경기	10,978,390	116,794	22,340	55,855	9,647	3,474	6,617
강원	1,503,471	2,686	2,257	4,829	993	107	2,366
충북	1,498,213	8,102	2,640	5,003	1,147	94	2,288
충남	1,979,411	17,465	3,817	4,089	1,504	30	3,432
전북	1,862,913	2,726	3,122	4,423	1,268	89	3,275
전남	1,936,494	4,158	3,817	2,895	1,263	26	4,153
경북	2,683,021	12,794	3,973	12,938	1,443	142	3,289
경남	3,175,677	20,729	4,511	9,978	1,636	154	3,599
제주	558,511	1,187	766	1,470	182	16	394

행정자치부, 2007, 외국인 실태조사

32) 행정자치부, 2007, 외국인 실태조사(조상균·이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1호, 2007, 149-150쪽 재인용): 앞의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수가 통계청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참고자료로 하였다.

외국인 결혼 이주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의 순위를 보면 서울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기지역, 인천, 부산 순이며, 특히 농촌지역인 경북, 전남, 전북순으로 외국인 국제결혼이주자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외국인 등록인구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5〉 외국인 등록 인구

(단위:명)

구 분	2006년			2007년		
	계	외국인(남)	외국인(여)	계	외국인(남)	외국인(여)
전 국	632,490	370,728	261,762	765,429	438,660	326,769
서 울	175,036	83,374	91,662	229,072	111,467	117,605
부 산	23,397	13,687	9,710	27,662	15,929	11,733
대 구	17,104	10,542	6,562	19,409	11,472	7,937
인 천	39,463	26,457	13,006	45,464	29,636	15,828
광 주	8,155	4,700	3,455	10,016	5,398	4,618
대 전	9,803	4,830	4,973	12,177	5,887	6,290
울 산	10,494	7,286	3,208	12,804	8,644	4,160
경기도	200,798	127,427	73,371	234,030	144,614	89,416
강원도	10,252	5,339	4,913	11,994	6,035	5,959
충청북도	17,326	11,009	6,317	20,731	12,761	7,970
충청남도	26,411	17,376	9,035	30,553	18,968	11,584
전라북도	13,475	6,751	6,724	16,151	7,882	8,269
전라남도	11,903	6,073	5,830	15,126	7,679	7,441
경상북도	29,721	18,244	11,477	33,721	20,144	13,577
경상남도	35,953	25,776	10,177	42,389	29,813	12,576
제주도	3,199	1,857	1,342	4,130	2,330	1,800

<http://kosis.kr/OLAP/Analysis>

위의 표에서 보듯이 현재 2007년 외국인의 등록현황은 2006년에 비하여 약 13만여

명이 증가하였다. 우리사회가 개방화에 의해 외국인의 증가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수가 어느 일정지역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가고 있는 현상을 알 수 있다.

대도시가 아닌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주로 다문화가정과 같은 결혼이민자의 경우가 높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즉 대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공장이나 일자리가 있는 대도시 주변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기타 농어촌도시나 소도시의 경우 일자리 보다는 결혼 등으로 이주를 하여 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절 다문화가정내의 자녀

1. 다문화가정내의 자녀 실태

가. 다문화가정의 자녀

2007년 4월 기준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 현황은 전국적으로 44,258명이 있다. 이들 자녀들의 지역별 현황은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다. 이중 특이한 점은 전남, 충남, 경남, 경북 등의 경우는 타 지역별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이 이 지역에 그만큼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경우는 향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대도시보다 이들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 우리의 가장 전형적인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다문화가정의 자녀 현황:2007년 기준

(단위:명)

구 분	주민등록인구('07.4.30)	국제결혼 가정자녀
		계
합 계	49,092,419	44,258
서 울	10,200,096	5,305
부 산	3,604,967	2,269
대 구	2,496,550	2,019
인 천	2,638,422	2,313
광 주	1,410,660	1,231
대 전	1,471,901	824
울 산	1,093,722	884
경 기	10,978,390	6,617
강 원	1,503,471	2,366
충 북	1,498,213	2,288
충 남	1,979,411	3,432
전 북	1,862,913	3,275
전 남	1,936,494	4,153
경 북	2,683,021	3,289
경 남	3,175,677	3,599
제 주	558,511	394

<http://kosis.kr>.

나. 다문화가정 자녀의 재학생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이 국내에서 취학연령으로서 취학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재학현황³³⁾

연도	'05년				'06년				'07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서울	555	108	25	688	756	148	77	981	1,040	234	73	1,347
부산	203	36	11	250	306	37	21	364	391	67	25	483
대구	133	15	9	157	158	22	10	190	283	33	8	324
인천	243	25	19	287	207	25	14	246	421	54	20	495
광주	117	8	2	127	118	8	7	133	279	32	11	322
대전	82	14	17	113	129	24	11	164	191	30	9	230
울산	10	0	0	10	75	15	5	95	177	22	4	203
경기	1,259	176	45	1,480	1,454	338	60	1,852	2,283	460	127	2,870
강원	288	14	2	304	398	40	10	448	729	67	11	807
충북	253	19	7	279	331	23	6	360	642	66	15	723
충남	312	24	9	345	464	53	15	532	950	131	35	1,116
전북	475	29	13	517	679	45	11	735	970	99	10	1,079
전남	550	28	9	587	878	54	15	947	1,361	101	17	1,479
경북	411	30	27	468	432	40	13	485	651	53	18	722
경남	394	56	7	457	357	49	4	410	968	125	27	1,120
제주	47	1	4	52	53	3	0	56	108	14	3	125
계	5,285	582	202	6,069	6,742	921	279	7,942	11,444	1,588	413	13,445

<http://kosis.kr>.

위의 표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재학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즉 대학생의 경우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형성된 시점이 1990년

33) 2007년의 경우 4월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 이후부터이므로 이들이 아직 대학생에 이르지 않아 그 현황 통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본 현황은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노동자 자녀, 기타 혼혈아 등 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인인 경우를 포함한 학생 수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학생 수를 보면 전북, 전남, 경남 등 농어촌 지역의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수를 보면 2006년에는 279명에서 2007년에는 413명으로 약 40%이상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수를 보면 2005년 6,069명과 2006년에 7,942명인데 반해 2007년에는 13,445명으로 매우 높게 증가하였다. 2007년의 통계수치를 보면 2005년과 2006년에 비해 급격히 학생수가 증가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취학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

다문화가정 자녀현황에 따라 결혼이민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8〉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³⁴⁾

(단위:명)

구 분	계	만6세미만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학 생 수	44,258	26,445	14,392	2,080	1,341
비율(%)	100	59.8	32.5	4.7	3.0

행정자치부 통계, 2007.

다문화가정내의 자녀현황에 따라 그 자녀수는 44,258명으로 이중 고등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연령은 1,341명이며, 중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생수는 2,080명이며, 초등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인원수는 14,392명이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학할 수 있는 인원수가 26,445명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3.8〉에서 본 현황과 비교하면 고등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인원이 1,341명인

34) 2007년 5월 행정자치부 통계이다.

데 반해 실질적으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2007년 기준으로 413명으로 약 30%정도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2,08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1,588명이 실제적으로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거의 대다수는 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⁵⁾

2. 이주 노동자 자녀 현황

〈표 3.9〉 이주 노동자 자녀 현황³⁶⁾

구분	'05년				'06년				'07년			
	초	중	고	합계	초	중	고	합계	초	중	고	합계
서울	282	158	68	508	382	100	18	500	199	233	36	468
부산	59	26	17	102	103	6	2	111	43	13	3	59
대구	28	11	11	50	33	5	7	45	28	1	0	29
인천	49	14	9	72	55	4	2	61	97	6	2	105
광주	10	5	4	19	1	2	1	4	7	1	0	8
대전	26	7	21	54	23	7	2	32	25	6	0	31
울산	10	0	0	10	16	1	0	17	2	0	0	2
경기	304	122	54	480	208	48	10	266	204	97	11	312
강원	40	5	6	51	23	4	1	28	28	4	4	36
충북	29	10	6	45	12	8	9	29	23	12	1	36
충남	17	22	8	47	126	21	5	152	17	1	1	19
전북	12	8	2	22	4	0	0	4	3	1	0	4
전남	15	4	8	27	51	4	0	55	1	0	0	1
경북	17	11	3	31	10	1	0	11	14	1	1	16
경남	20	16	6	42	66	3	4	73	64	15	4	83
제주	1	5	25	31	2	1	0	3	0	0	0	0
계	919	424	248	1,591	1,115	215	61	1,391	755	391	63	1,209

교육인적자원부, 2007.

위의 표에서 이주노동자의 자녀현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바, 이주노동자의 범

35)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과 교육대상자의 현황 등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어 모두 정확한 수치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소간의 수치상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36) 이주노동자의 자녀현황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 자녀수를 포함하고 있는 곳이 있어 정확한 이주노동자의 자녀현황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자료, 2007.

주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칭하였다. 따라서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자녀현황은 한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현황과도 일치한다.

한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수는 2005년에 비하여 감소추세에 있다. 즉 2005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수는 1,591명이었으나 2006년에는 1,391명, 2007년에는 1,209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³⁷⁾ 이는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나가고 있는 것과,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 2007년의 통계는 2007년 4월까지에 의한 통계수치이다.

제4장 다문화가정의 인권침해 실태 및 수요조사

제1절 다문화가정내 인권 침해 실태 연구

다문화가정내의 인권침해는 부부간의 폭력과 성학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심한 욕설 및 학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인권침해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로 다른 피부색과 언어소통의 곤란함 그리고 경제사정이 열악해짐에 따라 침해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다문화가정내의 부부간 인권침해 특히 부부간의 폭행 및 성폭행 등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실태를 파악하여 보았다.

1. 다문화가정내 부부간 인권 침해 유형

가. 다문화가정내 배우자 폭행

다문화가정내의 문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외국인 배우자 특히 여성이 한국의 남편과 갈등에 의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간 배우자 폭력 발생률은 2007년 40.3%로 나타났으나, 아내가 외국 출신인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의 실태는 47.7%로 일반적인 한국인 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보다 7.4%높게 나타나고 있다.³⁸⁾

200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다문화가정의 부부는 47.7%로 한국가정의 부부폭력발생률 40.3%보다 높게 나타났다.³⁹⁾ 다문화가정내의 폭력은 남편이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한 신체적 폭력이 38.8%

38) <http://news.khan.co.kr/kh-news>:경향신문, 2008.4.29일자.

3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다문화가정의 폭력실태에 대하여 2007년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로 아내가 남편에 한 폭력발생률 17.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내의 폭력이 남편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⁴⁰⁾

이러한 폭력의 유형에 대하여 설동훈(2006)의 연구에 따르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은 언어폭력이 31%로 가장 높으며, 신체적 폭력이 10-14%로 나타나고 또한 성적학대 그리고 위협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⁴¹⁾

〈표 4.1〉 다문화가정의 부부폭력발생률⁴²⁾

(단위: %, 명)

구 분	전체 폭력 발생률	폭력유형별 발생률							(분석 대상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 폭력				
부부폭력	47.7	35.6	5.3	16.9	16.9	12.2	20.7	15.7	(38)
남성의 아내폭력	38.8	31.9	5.3	10.4	10.4	12.2	15.5	14.4	(23)
여성의 남편폭력	17.8	12.6	-	9.7	9.7	-	5.2	4.5	(27)
상호폭력	8.9	8.9	-	3.2	3.2	-	-	3.2	(3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내의 가정폭력은 남성이 외국인 결혼이주자에 가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폭력유형은 정서적 폭력으로 모욕적인 욕을 하는 행위,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학대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위의 수치에서 보면 남성이 아내에 대한 성적인 학대는 14.4%로 여성이 남편에 대하여 하는 성적학대의 4.5%보다 1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40) 신체적 폭력유형 중 경한 폭력은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을 때리는 행위와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이며, 중한 폭력은 배우자의 어깨나 목을 짝 움켜잡는 행위,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배우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를 물건(학대,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위의 내용에서 신체적 폭력은 중한폭력에 대하여 서술 하였다.

41) 손현숙·박세정,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쪽.

42) 한국내의 부부간 폭력발생률은 다음과 같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366쪽 참조.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문제의 원인으로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성격과 기대의 차이, 남편의 성격 그리고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결혼하는 경우 '매매혼'이라는 심리에 의한 폭력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 한국내 부부간 폭력발생

(단위: %, 명)

구 분	전체 폭력발생률	폭력유형별 발생률							(분석 대상수)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경한 폭력	중한 폭력	(경한+중한)폭력				
부부폭력	40.3	33.1	11.1	4.8	11.6	4.1	19.6	10.5	(6,561)
남성의 아내폭력	33.1	26.4	7.7	4.5	9.4	3.2	14.3	9.5	(5,976)
여성의 남편폭력	27.1	22.5	5.3	2.6	6.4	1.9	13.8	3.6	(4,114)
상호폭력	19.9	15.9	1.9	2.3	4.2	1.0	8.5	2.6	(3,529)

특히 〈표 4.2〉의 한국내 부부간 폭력유형별 발생현황 등을 보면 특이한 점은 아내가 남편을 폭행하는 비율이 27.1%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여성이 남편을 폭행하는 비율에 비하면 약 1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부간 상호폭력도 19.9%로 다문화가정내의 부부간 상호폭력의 8.9%에 비하면 약 11%가 높게 발생하고 있다.

나. 다문화가정의 폭력행위 유형별 발생률

다문화가정내의 가정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유형별 발생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내에서 가정폭력은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인 신체에 대한 폭력외에 간접적으로 심리에 위협을 가하는 폭력과 생활비 등을 주지 않아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무형력의 행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한국이 낯선 곳으로 그 가족내에서 따돌림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냉대하는 경우는 신체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

아래 〈표 4.3〉에서 보면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가 15.5%,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가 12.2%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은 5.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3〉 다문화가정의 폭력행위 유형별 발생률⁴³⁾

(단위: %)

폭력 행위	최근 발생률	
	아 내	남 편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31.9	12.6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17.6	4.5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14.5	-
어깨나 목 등을 짝 움켜잡는 행위	5.3	-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	5.3	-
목을 조르는 행위	-	-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	-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10.4	9.7
혁명대,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5.3	-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5.3	-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12.2	-
배우자 동의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5.3	-
수입·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5.3	-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15.5	5.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9.3	-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10.4	4.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다. 다문화가정의 부부간 성적 학대

위의 〈표 4.1〉에서 보듯이 다문화가정의 부부간 폭력중에서 성적인 학대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편으로부터 성학대를 받는 아내가 14.4%, 외국인 아내로부터 성학대를 받는 남편은 4.5%이었다. 성학대의 상호폭력은 3.2%가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내가 성학대를 당하는 경우는 11.2%으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성학대를 당하는 경우는 1.3%에 비해 물리적으로 약한 외국인 여성이 상대적으로 성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표 4.3〉에서 알 수 있듯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가

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의 보고서, 687쪽 재인용.

9.3%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또한 10.4%로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 여성이 성적인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인권침해

가. 다문화가정내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다문화가정내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경우 피부색, 생김새, 문화, 인종의 차이와 편견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많은 곤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사교육과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⁴⁴⁾

특히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이 사회로부터 다른 시선을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다.⁴⁵⁾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수군거리는 것에 대하여 50.0%가 이를 경험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또한 85.1%가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등의 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학교내에서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로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는가에 대하여는 72.9%가 그렇지 않다고 하여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21.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내에서는 아직 일반 사회보다는 차별을 받지 않고 있으나 21.1%가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나. 다문화가정내 자녀들에 대한 침해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이 주위사람들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는 74.3%가 없다고 하였으나 26.7%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욕설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⁴⁶⁾

외모에 대한 놀림 등에 대하여 놀림을 받은 적이 있는 가에 대하여는 34.3%가 친구들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친구들과로부터 외모로 인하여 따돌림을 받은 적

44) 박정희, “한국사회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현황”, 국제문화연구, 제26집, 청주대학교, 2007, 56쪽.

45)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2006, 46쪽.

46) 앞의 보고서, 47쪽.

이 있는 가에 대하여 21.1%가 경험을 하였다고 조사되었다.⁴⁷⁾

이처럼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은 주변이나 친구들로부터 외모의 차이로 인하여 폭행이나 따돌림 등의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한국사회의 인종적 편견과 유교적인 배타성에 의해 외국인 자녀의 입학을 일부 학교에서 기피하거나 통합교육을 거부하는 것 등에 의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내 자녀들의 경우 학교내에서 동료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외모가 달라서’ 라는 이유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단일민족, 백의민족 그리고 유교주의 정신을 지나치게 강요하여 교육을 하고 있어 세계화에 따른 타민족과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미약하여 다문화가정내 자녀들에게 인권적인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여 이들을 포용하고 교육과 사회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 치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와 경찰기관은 이들 아동과 외국인 여성 등에 대하여 최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2절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 실태조사

1. 다문화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가. 조사내용

본 연구의 조사 내용은 크게 7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영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사항이다. 다문화가정내의 여성이 한국으로 이주해온 후 만족도와 남편과의 갈등, 가정생활에 불만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47) 앞의 보고서, 46쪽.

둘째, 가정폭력 발생 관련 사항이다. 한국으로 이주해온 후 가정폭력의 경험이 있는지, 폭력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셋째,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이다.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정도, 피해시 치료경험, 피해시 신고경험 등을 포함하였다.

넷째,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기관에 신고 및 상담기관이다.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시 경찰기관에 신고한 적이 있는가, 신고를 몇 번이 했는가, 파출소 등이 가까이 있는가, 경찰공무원의 순찰 횟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치안문제이다. 한국으로 이주해온 후 출산한 적이 있는가, 자녀가 학교나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자녀의 인권침해시 신고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문항을 포함하였다.

여섯째,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기관의 대응에 대한 내용이다. 파출소 등을 방문시 의사소통이 되었는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치안 안전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일곱째, 설문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나.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한국으로 이주해와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정 여성은 총 61명을 대상으로 응답조사하였다.

연령대는 20대 28명, 30대 22명, 40대 7명, 50대 4명으로 주로 20대와 30대가 82%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상태는 혼인중이 54명, 별거중이 4명, 동거중 2명, 사별이 2명으로 혼인중에 있는 경우가 87.1%로 가장 높으며, 기타 별거 등의 경우도 9.7%로 나타났다.

〈표 4.4〉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 조사대상

구 분		명	비 율	구 분		명	비 율
지역	경기도 안산	4	6.5	결혼상태	혼인중	54	87.1
	경남 김해시	5	8.1		별거중	4	6.5
	경북 구미시	15	24.2		동거	2	3.2
	전남 함평	5	8.1		사별	2	3.2
	전북 진안군	20	32.3		합계	62	100.0
	충남 아산시	1	1.6	본인의 신체장애	있다	2	3.3
	충북 청원군	8	12.9		없다	59	96.7
	충북 청주시	4	6.5		합계	61	100.0

2) 조사 도구 및 조사과정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는 연구자가 자체 제작한 설문지와 경찰기관에 대한 역할 등이다. 설문지는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이 치안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총 7개영역 6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7개 요인중에서 대다수를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사과정은 8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1개월의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여서 1대1 면접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문화여성들이 한국어를 잘 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한국문화 교육을 수강하는 대상으로 하여 한국인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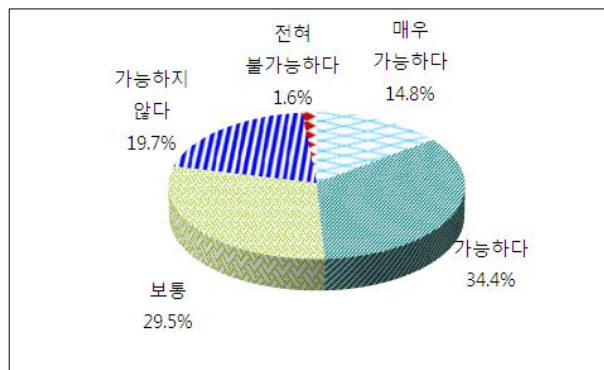
다. 조사 결과

1)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일반적 사항

가) 가족간의 의사소통

다문화가정내에서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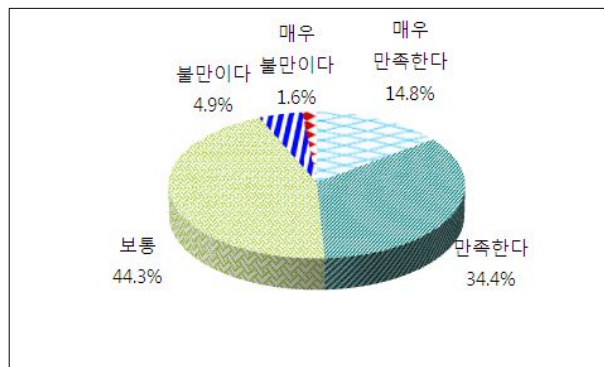
[그림 4.1] 가족간의 의사소통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들은 그들의 가족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 의사소통에 대하여 49.2%는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21.3%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정내 외국인 여성들과 가족간의 관계에 있어 의사소통은 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호간의 언어의 차이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나) 가정생활 만족도

[그림 4.2]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 가정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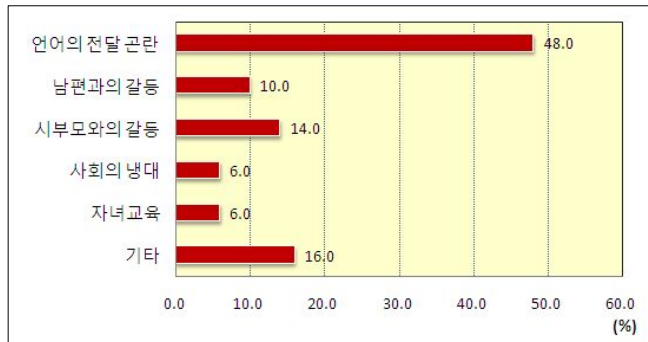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한국내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만족한다가 49.2%인 반면 불만인 경우 6.5%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하여 보통이다가

44.3%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에서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대다수는 크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가정생활이 불만인 이유에 대하여는 [그림 4.3]과 같다. 즉 가정생활의 불만족은 언어의 전달이 곤란한 것을 48.0%로 들어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시부모와의 갈등과 남편과의 갈등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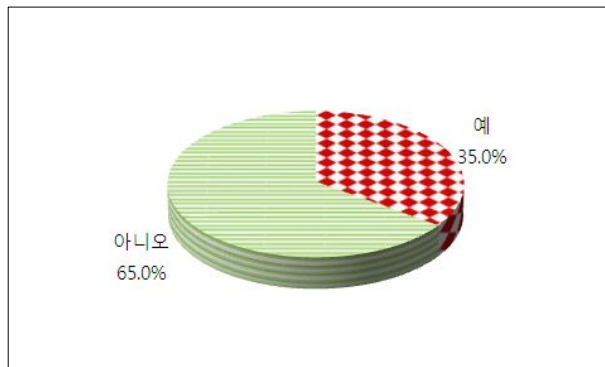
[그림 4.3] 가정생활의 불만 원인



다) 한국 국적취득 여부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의 한국 국적취득에 대하여 대다수의 응답자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의 [그림 4.4]는 한국 국적취득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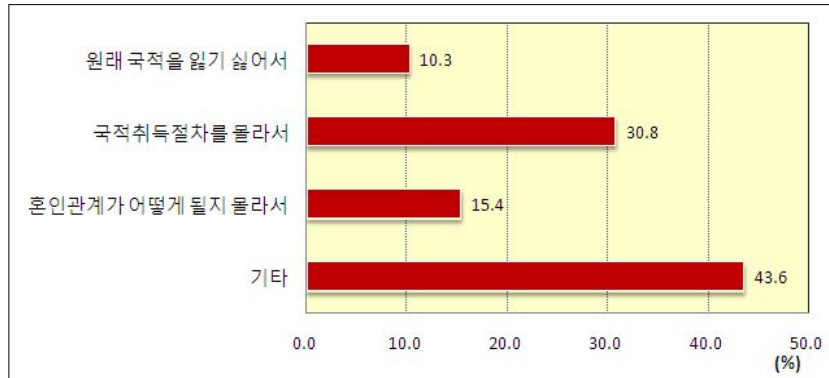
[그림 4.4] 한국 국적취득 유무



위의 [그림 4.4]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65.0%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그림 4.5]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사회내의 국적 취득방법을 몰라서의 경우가 대다수로 차지하고 있다.

[그림 4.5] 한국 국적 취득하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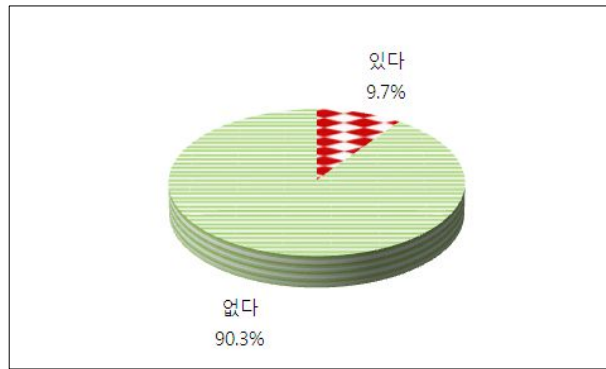
위의 [그림 4.5]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유중 가장 높은 원인은 국적취득절차를 몰라서 30.8%, 혼인관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15.4%, 원 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싫어서가 10.3%로 나타났다. 이중 기타의 경우가 43.6%로 가장 높는데 기타의 경우로는 기간이 남아서, 체류기간이 짧아서, 시간이 없어서, 취득절차진행중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의 취득에 대하여 많은 수가 향후 한국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2) 가정폭력 발생 관련 사항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가정내에서의 폭력 발생의 침해를 받은 경험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림 4.6] 결혼 후 가정내 폭력 및 인권침해 경험



위의 [그림 4.6] 결혼 후 가정내 폭력이나 인권침해 경험에 대하여 조사한바 9.7%만이 인권침해 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의 대다수 응답자인 90.3%는 인권침해 등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 결혼 후 가정내에서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에 시달리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의 선행연구와는 상호 다른 결과로 나타났다.⁴⁸⁾

3)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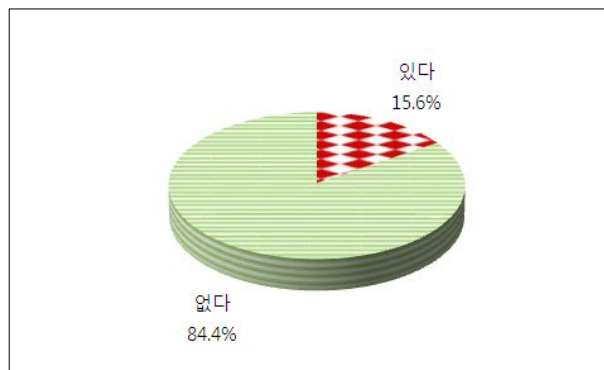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들의 가정폭력 및 인권침해 등을 당할 경우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 및 상담기관의 상담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가) 관할 파출소 등에 대한 신고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경찰공무원이나 관할 파출소 등의 국가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48)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상당수는 설문조사시 본인에게 불이익 등이 돌아올 것을 염려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경찰관들의 신고출동 경험과 비교할 경우에서도 나타난다. 즉 경찰관들의 약 50%정도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4.7] 파출소 등에 대한 신고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내 폭력이나 인권침해 시 지역 경찰에 신고한 경험에 대하여 있다가 15.6%, 없다가 84.4%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 가정내 폭력 등을 당할 경우 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정내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내 폭력 등을 당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는 폭력 등이 심하지 않아서가 응답자의 75.0%이며, 신고방법을 몰라서 25.0%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고방법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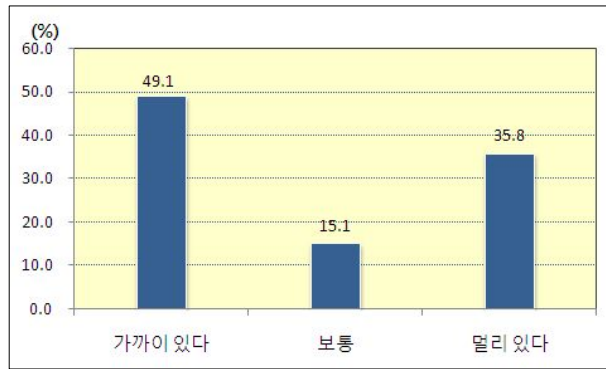
나) 관할 경찰기관과의 거리 등

다문화가정이 있는 장소와 관할 파출소 등의 경찰기관과의 거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관할 경찰기관과의 거리에 대하여 가까이 있다가 49.1%, 멀리 있다가 35.8%로 관할 경찰기관이 지근거리에 있다고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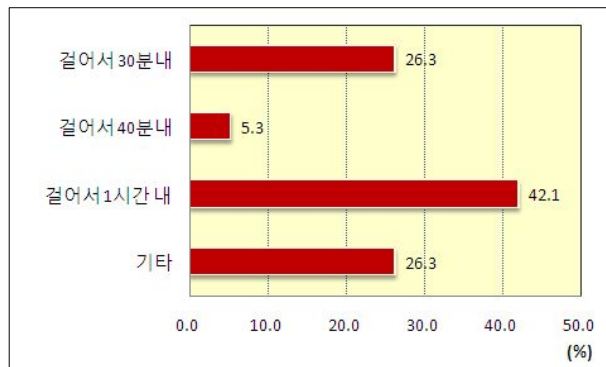
또한 관할 경찰기관이 거리상에 있어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에 대하여 도보로 걸었을 때에 걸리는 시간으로 평가를 하였다.

[그림 4.8] 집과 경찰기관과의 거리



아래 [그림 4.9]의 관할 경찰기관과의 거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4.9] 관할 경찰기관과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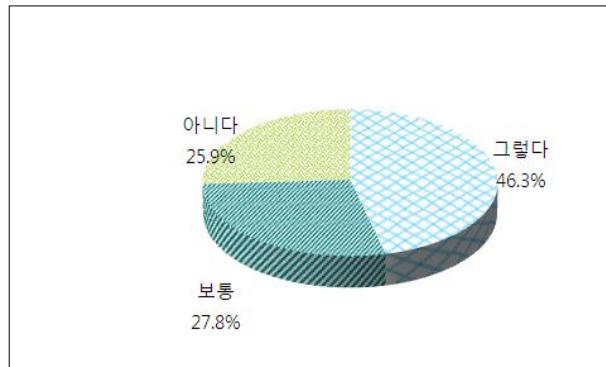


위의 [그림 4.9]에서 관할 경찰기관과의 거리에 대하여 걸어서 1시간 이내가 42.1%로 조사되었으며, 걸어서 30분 이내인 지근거리에서 있는 경우는 26.3%에 불과하다. 따라서 관할 경찰기관과의 거리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경찰공무원의 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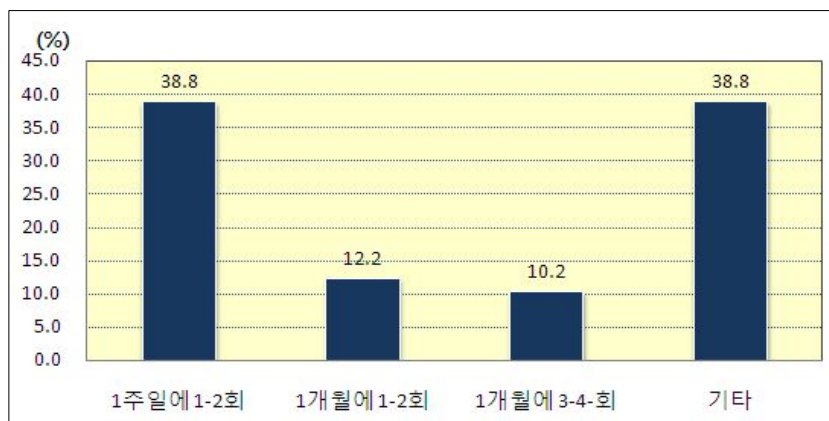
관할 경찰기관의 경찰공무원이 다문화가정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순찰을 하는가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림 4.10] 경찰공무원의 순찰여부



위의 [그림 4.10] 경찰공무원의 순찰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6.3%가 경찰공무원이 순찰을 자주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반대로 순찰을 자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는 25.9%, 그리고 보통이다가 27.8%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이 다문화가정이 있는 지역에 대한 순찰에 대하여 보통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1] 경찰공무원의 순찰 횟수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 자주 순찰을 도는 가에 대하여는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중 순찰횟수에 대하여는 1주일에 1-2회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개월에 1-2회도 12.2%, 1개월에 3-4회가 10.2%로 나타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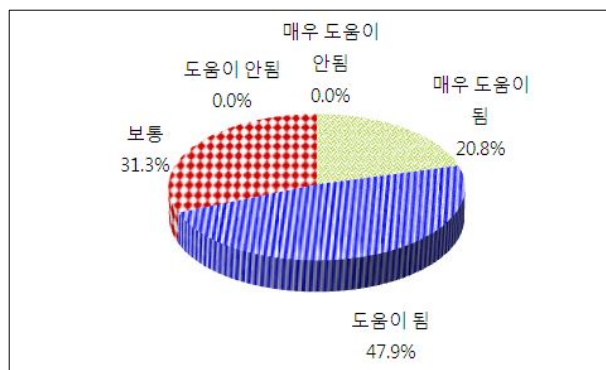
찰에 대한 횡수에 대하여 자주 하지 않는다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22.4%나 나타났다.⁴⁹⁾

라) 경찰공무원의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인권침해 영향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 경찰기관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림 4.12]는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방지를 당할 경우에 경찰공무원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하여 68.7%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 별로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31.3%로 나타나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들도 인권침해나 가정폭력을 당할 경우 경찰기관이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12] 경찰공무원의 도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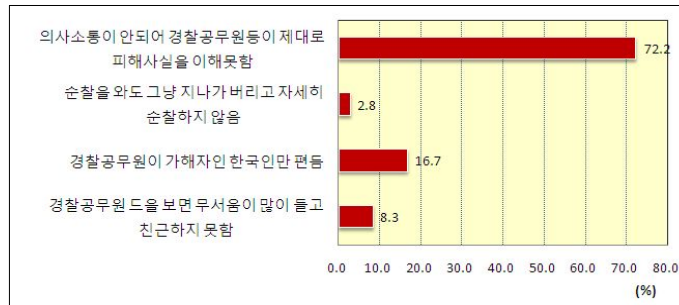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4.13]에서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할 경우 경찰공무원이 도움이 안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그 이유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피해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72.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경찰공무원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호간의 언어문제로 인하여 피해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49)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경찰공무원의 순찰에 대한 횡수는 아마 그들이 경찰공무원이 순찰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할 경우는 순찰이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았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이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의 피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편만 드는 경우도 16.7%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3] 경찰공무원이 가정폭력 등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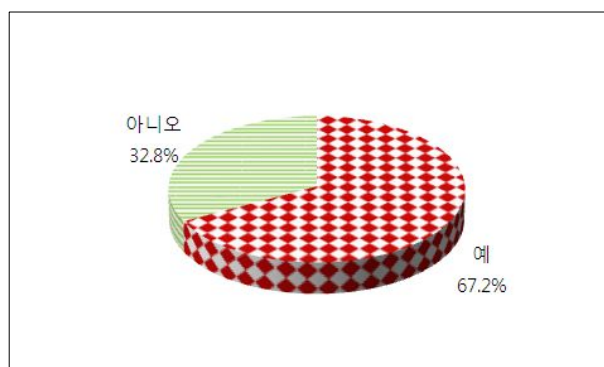
4)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치안실태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이주하여 결혼 후 출산한 경험과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이나 사회로부터 인권적 침해를 받은 경험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출산경험 및 자녀 수

한국 내에 이주하여 결혼 후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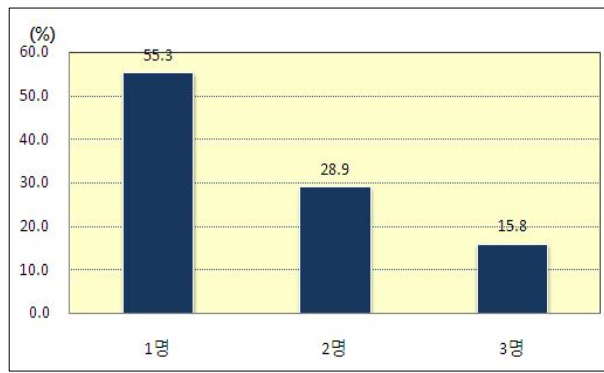
[그림 4.14] 한국내에서 출산 경험



한국내에서 출산 경험에 대하여 응답자의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32.8%로 나타났다. 한국으로 이주하여 결혼한 후 대다수의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들은 아이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출산은 우리사회에 더 많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증가시키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등의 여건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몇 명 정도 출산하는가에 대한 조사로 자녀들의 수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림 4.15] 자녀들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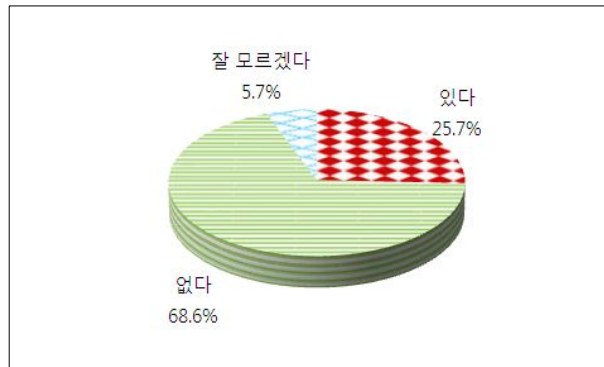


위의 [그림 4.15]에서 보듯이 한국내에 이주하여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여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주로 1명의 자녀를 두는 경우가 55.3%, 2명 이상을 두는 경우가 44.7%로 나타나고 있다. 즉 2명 이상의 자녀를 두는 경우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자녀들의 인권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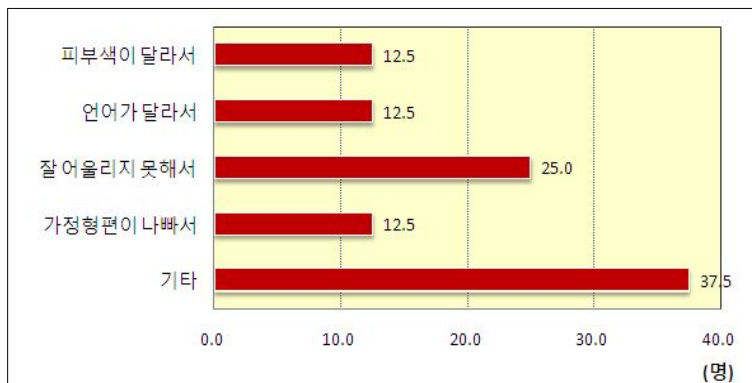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이 학교내에서나 사회로부터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등 인권적 침해를 받은 경험 등에 대하여 그 모인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그림 4.16]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폭행 피해



위의 [그림 4.16] 자녀의 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25.7%는 폭행 및 인권침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혀 그런 경험이 없다는 68.6%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르겠다가 5.7%로 나타나 자녀들이 외부에서 폭행이나 인권침해를 받는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에 대한 외부에서의 폭행 및 인권침해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아래의 [그림 4.17]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7] 자녀들의 폭행 및 인권침해 피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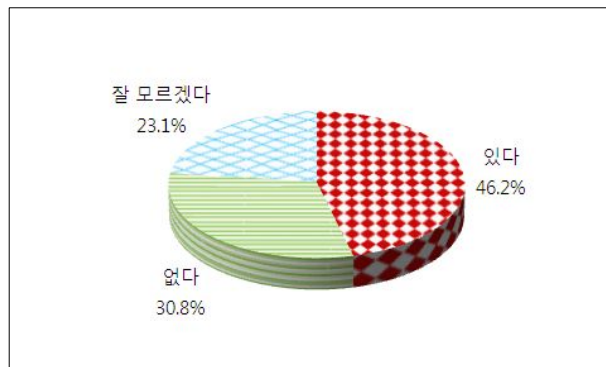
위의 [그림 4.17]는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이 폭행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25.0%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피부색이 달라서 12.5%, 언어가 달

라서 12.5%, 가정형편이 나빠서 12.5%로 나타났다. 이중 다문화가정 자녀가 안고 있는 외형적인 문제인 피부색과 언어의 차이에 의해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25%로 나타났다.

다) 폭행 및 인권침해시 신고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이나 사회로부터 폭행 및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 및 상담기관에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4.18] 자녀의 인권침해시 신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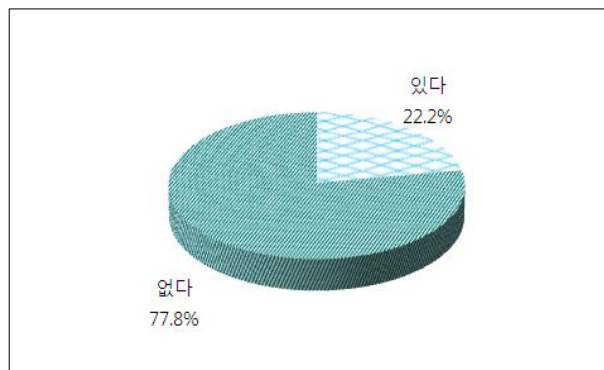


자녀의 따돌림이나 폭행경험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있느냐에 대하여 46.2%는 그렇다고 하였으며, 30.8%는 신고할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23.1%로 조사되었다. 자녀들이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할 경우 경찰기관에 신고할 생각을 가지지 않는 경우로 보여지는 것이 53.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고할 생각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이들의 사소한 문제여서가 77.8%, 신고해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서 22.2%로 나타났다. 즉 아이들의 집단 따돌림과 폭행을 아이의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는 이유 등에 의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19]에서 폭행이나 따돌림 경험시 상담경험이 있는가에 대하여 있다가 22.2%, 없다가 77.8%로 나타났다. 즉 자녀들이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 특별히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4.19] 폭행이나 따돌림 경험시 상담경험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아이들의 문제를 지나치게 경시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5)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기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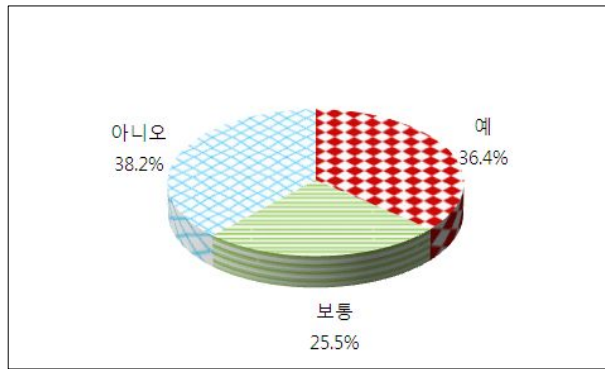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기관이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상담 및 의사소통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입장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역할을 조사하였다.

가) 의사소통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경찰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사소통이 잘되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경찰기관을 방문할 경우 경찰공무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한가에 대하여 38.2%는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 경우는 36.4%에 불과해 불편함을 느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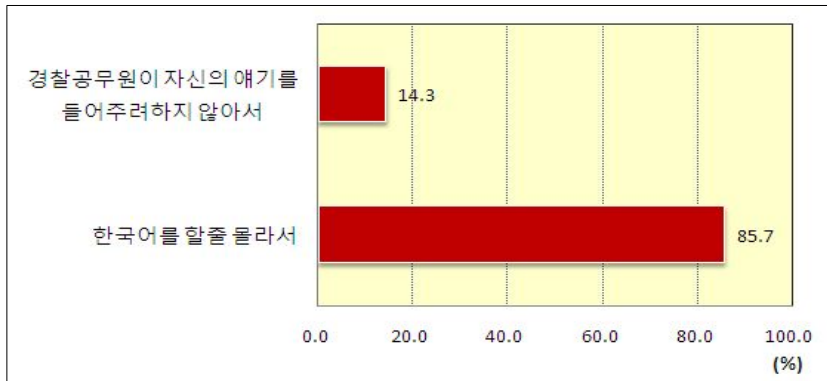
[그림 4.20] 경찰기관 방문시 의사소통



경찰기관을 방문한 경우 경찰공무원과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느낀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의 [그림 4.21]에서 보듯이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이 한국어를 할 줄 몰라서가 85.7%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찰기관을 방문할 경우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은 많은 불편함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림 4.21] 경찰공무원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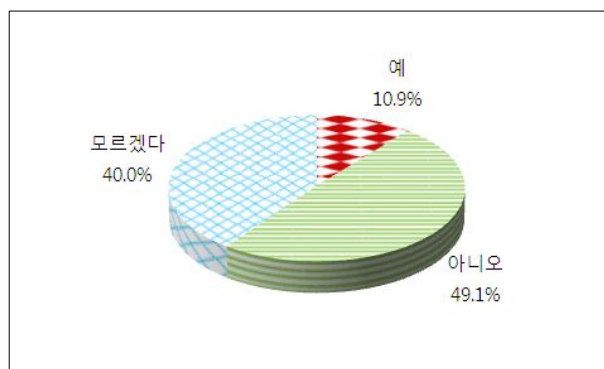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서가 14.3%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경찰공무원이 아직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통역경찰공무원 필요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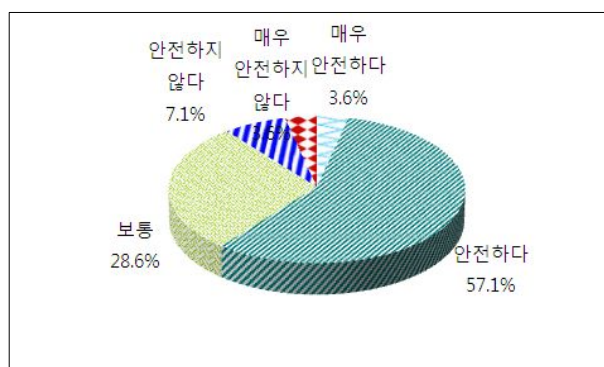
위의 [그림 4.22]에서 파출소나 경찰서 방문자를 위한 통역 담당 경찰공무원이 있는가에 대하여 49.1%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르겠다가 40.0%로 대다수 응답자인 89.1%는 통역경찰공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경찰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사소통을 위하여 통역을 해줄 경찰공무원이 근무하지 않고 있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림 4.22] 통역경찰공무원 근무 여부



다) 거주지의 안전도

[그림 4.23] 거주지의 안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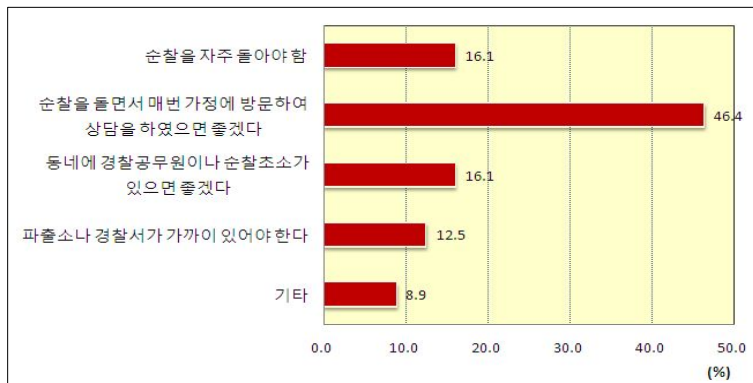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가 범죄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안전하다가 57.1%, 보통 28.6%, 안전하지 않다가 10.7%로 나타났다. 대다수 응답자인 60.7%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평가하였다.

라) 경찰기관의 역할 변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기관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기관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46.4%는 경찰공무원이 순찰을 돌면서 집을 방문하여 주기를 원하였으며, 순찰초소가 동네에 있었으며 좋겠다가 16.1%, 순찰을 자주 돌아야 한다가 16.1%로 경찰기관이 집주변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가 12.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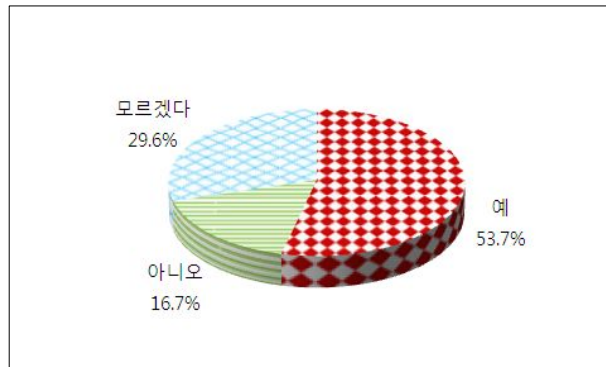
[그림 4.24] 경찰기관의 변화 방향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경찰방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찰과 자주 접하고 가까이 있으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동네별 책임 담당제를 구성하여 가구별 방문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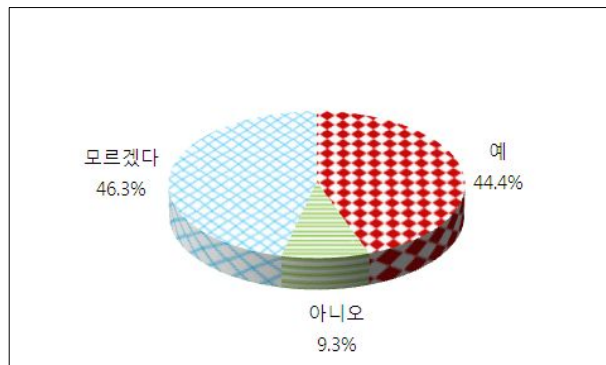
[그림 4.25] 책임 담당제 필요성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이 있는 지역인 동네에 대하여 책임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53.7%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경찰방문에 의해 범죄예방 및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주로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경찰기관은 파출소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파출소의 기능을 제대로 역할하기 위하여 파출소 증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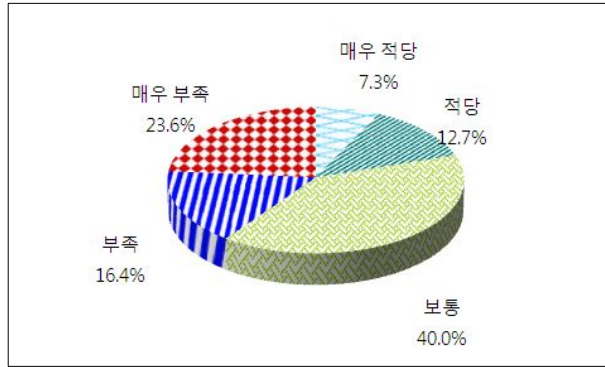
[그림 4.26] 파출소 증설 필요성



[그림 4.26]에서 보듯이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은 파출소가 현재보다 더 많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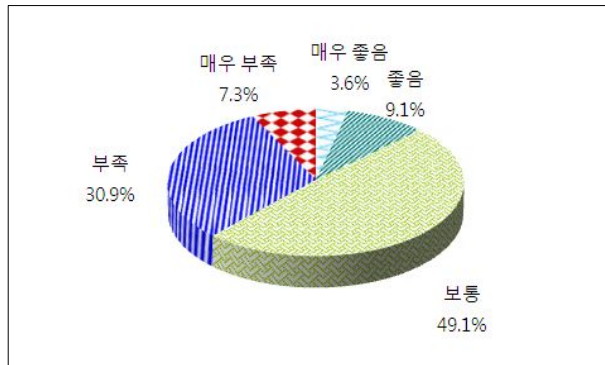
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44.4%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9.3%에 불과하다. 즉 이러한 파출소 증설에 대하여 대체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7] 치안위한 경찰조직의 적정성



가정폭력 및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찰기관의 조직이 적당한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위의 [그림 4.27]에서 응답자의 40.0%는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적당하다고 한 수는 20.0%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응답자들은 우리 경찰기관의 조직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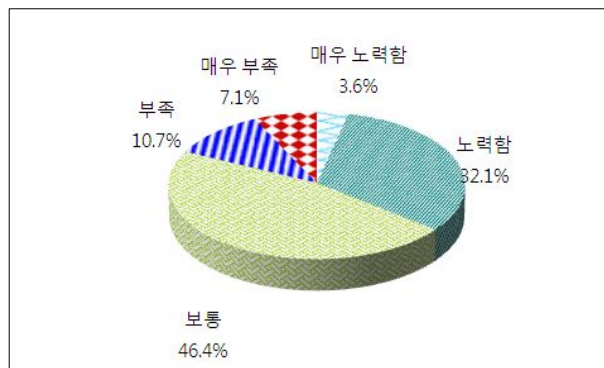
[그림 4.28] 경찰공무원의 순찰활동 적정성



가정 폭력 및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활동 및 치안을 위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위의 [그림 4.28]에서는 다문화가정내의 가정폭력과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활동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12.7%만이 만족함을 나타냈으며, 부족하다가 38.2%로 만족한 것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 두배이상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그만큼 우리 경찰공무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림 4.29] 경찰공무원의 치안 노력



위의 [그림 4.29]에서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기관이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는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응답자의 35.7%는 경찰기관 등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17.8%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그저그렇다고 한 경우가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찰기관 등이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특별한 치안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라. 소 결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서 본 바와 같이 향후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우리사회에 치안수요를 증가시켜 경찰의 적정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기에 와 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인 한 국민으로 인정을 하

여 이들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은 한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보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설문조사결과에서도 보여 지고 있다.⁵⁰⁾

선행연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의 보고서에서 보듯이 다문화가정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일반 가정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취학을 함으로 인하여 피부색 등의 차이에서 집단따돌림이나 사회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종종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들 다문화가정에 대한 별도의 경찰의 치안 역할을 정립할 시기에 와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은 현재의 치안에 대하여 별로 만족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이 안전한 치안 확보를 위하여 경찰기관의 증설과 경찰공무원의 순찰활동 강화 특히 경찰방문을 원하고 있다. 또한 각 파출소 등에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이 배치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다문화가정에 대한 방치는 치안의 불안을 가져오므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별도의 경찰역할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경찰관에 대한 실태조사

가.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영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사항이다. 경찰관이 외국인 여성 등이 한국내에 거주하여 있는 실태에 잘 알고 있는가, 정부의 다문화가정 정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0)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은 본 설문조사에서는 폭력의 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그들에게 불이익한 처우가 돌아올까 적절히 응답하지 못한 결과로 이보다 훨씬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다문화가정 실태에 관한 사항이다. 경찰관이 관할지역내에 다문화가정이 있는가에 대한 실태파악과 다문화가정 여성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의 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이다. 경찰관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할 경우 외국인 여성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가, 다문화가정내의 가정폭력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험이 있는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신고출동후 처리를 원활히 했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치안문제이다.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신고받은 적이 있는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왜 따돌림 등을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하여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는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기관의 대응에 대한 내용이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파출소 등을 방문할 경우 공정히 대우하고 있는가, 통역 담당공무원이 있는가,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치안이 안전한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섯째, 경찰관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성별, 연령, 계급, 관할지역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조사 대상은 직업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4.5〉 조사대상 경찰관 일반 사항

단위:%(명)

	구 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령	20대	11	14.9	직급	순경	19	25.7
	30대	40	54.1		경장	29	39.2
	40대	17	23.0		경사	16	21.6
	50대	6	8.1		경위	9	12.2
	합계	74	100.0		경감	1	1.4
성별	남	70	94.6	근무 지역	합계	74	100.0
	여	4	5.4		경북 청도군	14	18.9
	합계	74	100.0		전남 진도군	20	27.0
근무지	경찰서	16	21.6		충북 영동군	13	17.6
	지구대 또는 파출소	58	78.4		충북 옥천군	27	36.5
	합계	74	100.0		합계	74	100.0

2) 조사 도구 및 조사 과정

설문조사에 사용된 도구는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설문지와 경찰기관의 대응도 등이다. 설문지는 경찰관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척도와 그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50개 문항 6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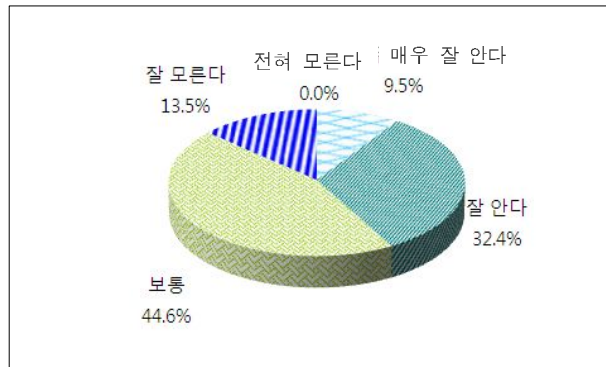
조사과정은 8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을 걸쳐 이루어졌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각 지방경찰서의 지구대와 파출소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자수는 총 74명으로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 조사 결과

1)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및 지원대책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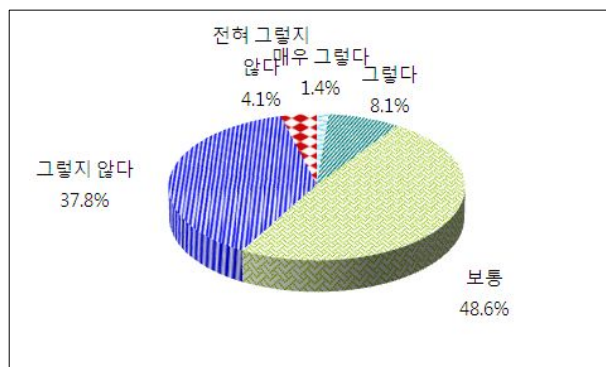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문화가정의 실태에 대한 이해도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4.30]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외국여성이 한국 농촌총각과 결혼하여 구성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관들의 실태 등에 대하여 매우 잘 안다 9.5%, 잘 안다 32.4%, 보통 44.6%, 잘모른다 13.5%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 등에 대하여 잘안다가 41.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31]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대책 실시 적절여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실시여부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9.5%만이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41.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대책 등이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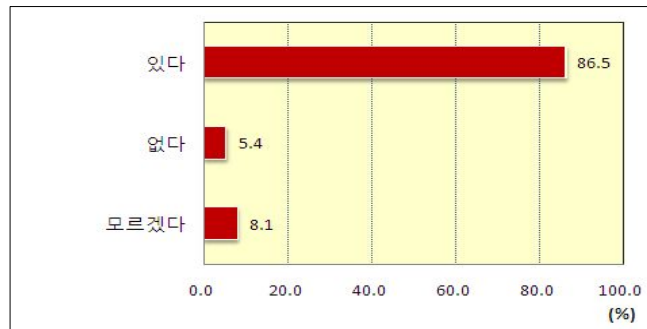
2) 다문화가정 실태

관할지역내에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사회 등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이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다문화가정 존재

관할지역내에 다문화가정이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4.32] 관할지역내 다문화가정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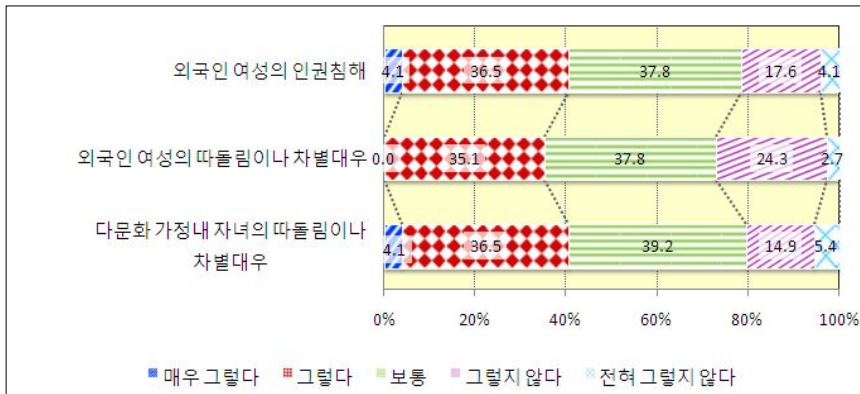


위의 [그림 4.32]에서 관할지역내 다문화가정이 있는가에 대하여 있다가 86.5%로 없다는 5.4%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즉 거의 대다수 지역에서는 관할지역에 다문화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은 더 이상 다른 집단이 아닌 우리사회내의 조직일원이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인권침해 여부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이 인권침해를 받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4.33] 다문화가정내 여성 및 자녀들의 인권침해



위의 [그림 4.33]에서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가 40.6%, 인권침해를 받지 않는다가 21.7%로 인권침해를 일반 우리 국민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여성들이 지역이나 사회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하여 35.1%는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한 경우는 27%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이 사회로부터 따돌림이나 차별대우를 받는가에 대하여는 그렇다가 40.6%인데 그렇지 않다가 20.3%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평가한 경우가 그렇지 않다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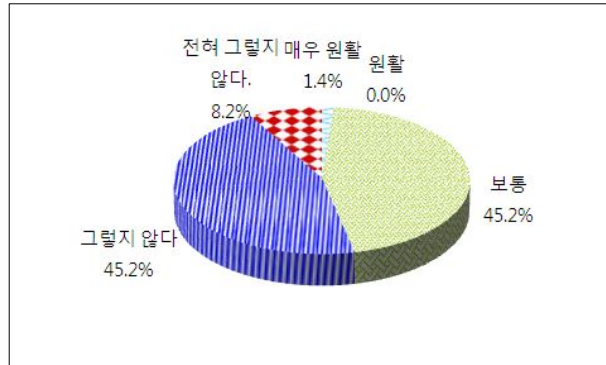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은 사회로부터 차별이나 냉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과 상호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3)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경찰기관의 대응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경찰기관의 출동여부 및 대처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내의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정도에 대하여도 설문조사하였다.

가) 외국인 여성과의 의사소통

[그림 4.34] 외국인 여성과의 의사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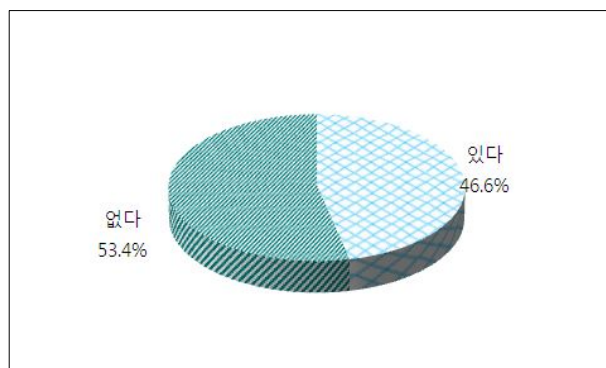


위의 [그림 4.34]에서 외국인 여성과 경찰공무원의 의사소통 원활정도에 대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가 53.4%로 원활하다는 1.4%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과 업무상 신고나 출동할 경우 의사소통에 많은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느끼는 것보다 경찰공무원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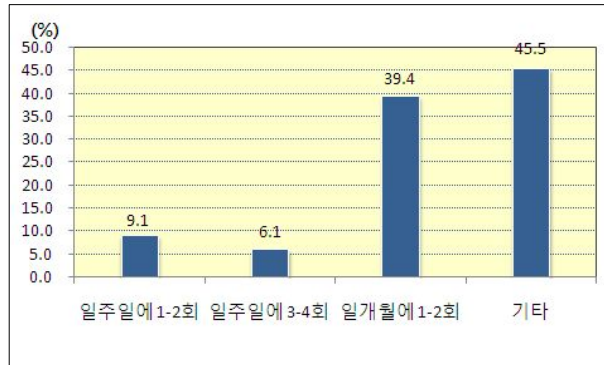
경찰공무원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침해 등에 의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험과 그에 따라 조사를 원활히 했는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4.35]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침해 신고시 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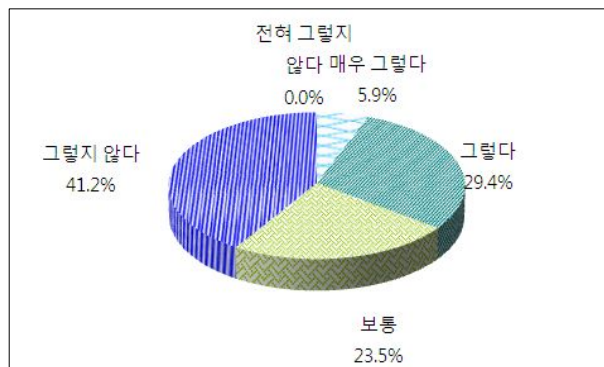
위의 [그림 4.35]에서 다문화가정의 인권침해 신고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출동 경험에 대하여 46.6%는 경험이 있다고 하여, 약 과반수의 경찰공무원은 다문화가정내의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반해 다문화가정 여성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10%정도만이 인권침해 등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것과 상호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4.36] 경찰공무원의 출동 횟수



위의 [그림 4.36]에서 다문화가정내의 인권침해에 따른 신고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출동 횟수에 대하여 1개월에 1-2회가 39.4%가장 높았으며, 일주일에 1-2회도 9.1%로 나타나고 있어 1개월내에 최소 1회 이상 출동한 경험이 54.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내의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경찰의 출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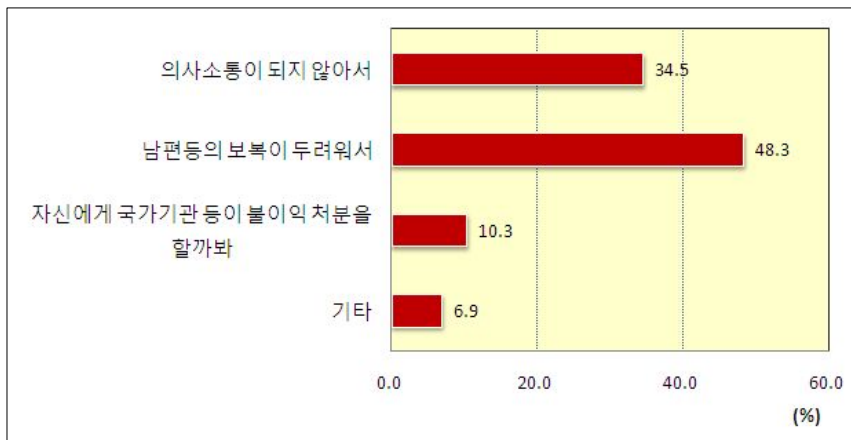
[그림 4.37] 경찰공무원의 출동에 따른 협조



위의 [그림 4.37]에서 다문화가정내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신고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출동에 따라 외국인 여성의 협조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출동에 따라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이 경찰공무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가 35.3%인 반면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41.2%로 경찰공무원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그림 4.36]에서 보는바와 같다.

[그림 4.38] 경찰공무원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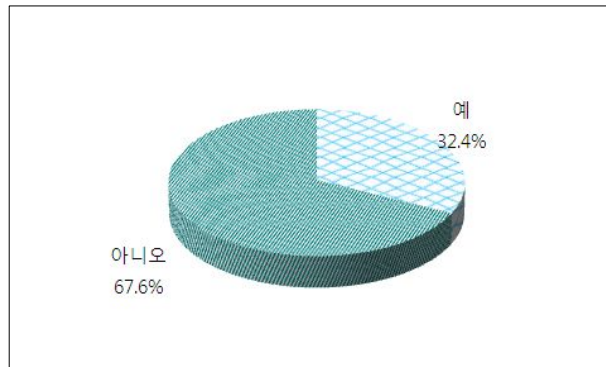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들이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 살고 있는 남편 등 시댁으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서가 48.3%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의 34.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들이 현재의 남편 등으로부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되어 경찰공무원 등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다문화가정내 외국인 여성들의 신고

다문화가정에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경찰기관에 신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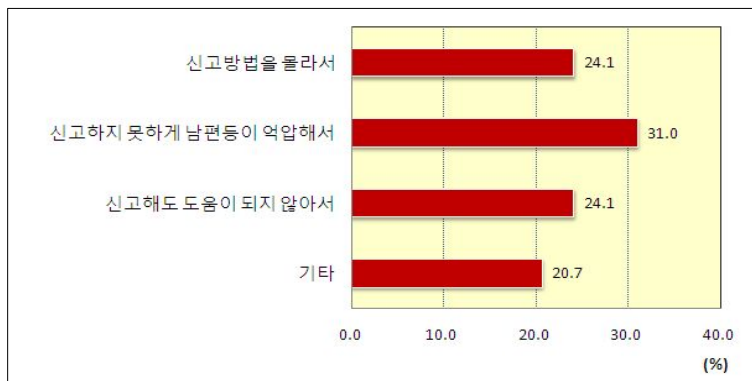
[그림 4.39] 인권침해시 신고



위의 [그림 4.39]에서 다문화가정내 외국인여성이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 경찰기관에 신고를 제대로 하는가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은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신고하지 않는다가 67.6%, 신고한다가 32.4%로 나타나 일선 경찰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은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이 인권침해 등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피해를 당한채로 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그림 4.40]에서 볼 수 있다.

[그림 4.40]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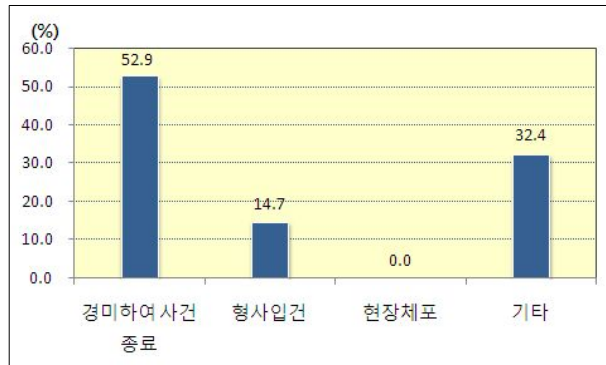


위의 [그림 4.40]에서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들이 경찰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신고를 하지 못하게 남편 등이 억압해서가 31.0%, 신고해도 도움이 되

지 않아서 24.1%, 신고방법을 몰라서 24.1%로 조사되었다. 경찰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48.2%로 나타나 체계적인 경찰의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경찰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처리여부에 대하여는 [그림 4.41]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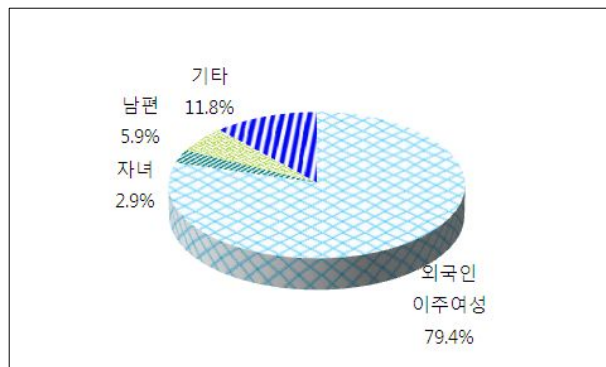
[그림 4.41] 출동후 처리 방법



위의 [그림 4.41]에서 경찰공무원이 다문화가정내의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그 처리 결과는 경미하여 사건을 종료한 경우 52.9%, 형사입건 14.7% 등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내의 가정폭력의 문제가 주로 발생하여 경찰기관에 신고한 경우 경미하여 사건을 바로 종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인권침해시 피해여부

[그림 4.42] 인권침해시 피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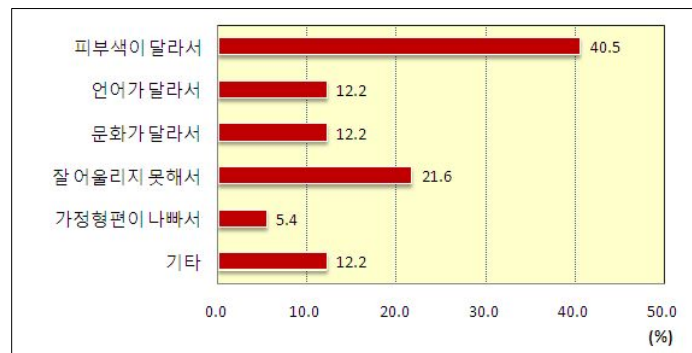


위의 [그림 4.42]에서 다문화가정내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시 피해자는 외국인 이주 여성이 7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편이 5.9%, 자녀가 2.9%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내의 인권침해 등의 경우 주로 외국인 여성이 가정내 약자로서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에서 우리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다문화가정내의 자녀 치안 문제

가)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의 피해

[그림 4.43]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의 인권침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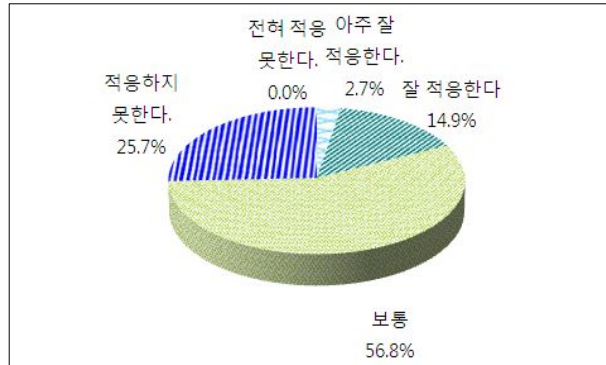


위의 [그림 4.43]에서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이 아이들 집단이나 사회로부터 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부색이 달라서가 40.5%, 잘 어울리지 못해서 21.6%, 언어가 달라서 12.2%, 문화가 달라서 12.2%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들이 판단하기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을 당하는 이유는 주로 서로 다른 피부색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이 보는 시각과는 달리 평가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은 자기들의 자녀가 피부색이 달라서 차별을 받고 침해를 받는다고 보는 경우는 12.5%로 나타난 반면 잘 어울리지 못해서 그렇다고 한 경우는 위의 그림과 비슷한 25.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다문화가정내의 자녀들이 받는 피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이 보는 평가가 다르다. 즉 경찰공무원의 경우 피부색이 달라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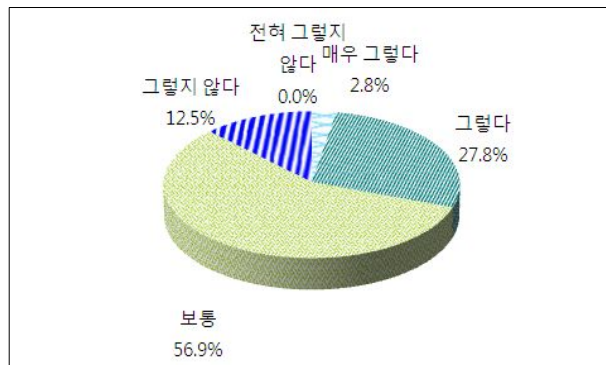
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 적응

[그림 4.44]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 적응도



위의 [그림 4.44]에서 관할지역 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 적응정도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은 적응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가 17.6%인데 반해 부정적인 견해가 25.7%로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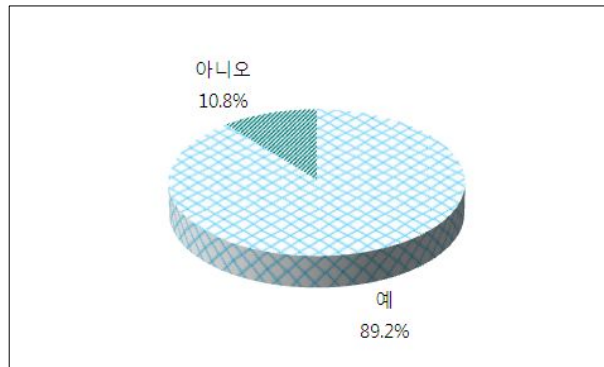
[그림 4.45] 다문화가정내 자녀에 대한 관심여부



위의 [그림 4.45]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공무원이 관할지역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그렇다가 30.6%인데 그렇지 않다가 12.5%로 나타나 더 많은 관심을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하여 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에 대한 대응자세에 대하여 아래 [그림 4.46]에서 볼 수 있다.

[그림 4.46]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에 대한 대응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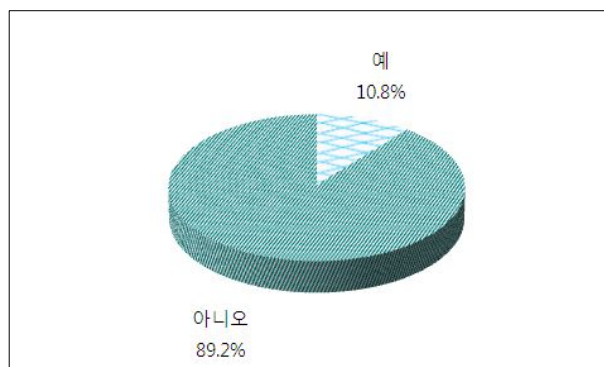
대부분의 경찰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평가하기를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을 우리 국민들과 동일하게 응대하는가에 대하여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0.8%는 아직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5) 경찰기관의 역할

가) 통역담당 경찰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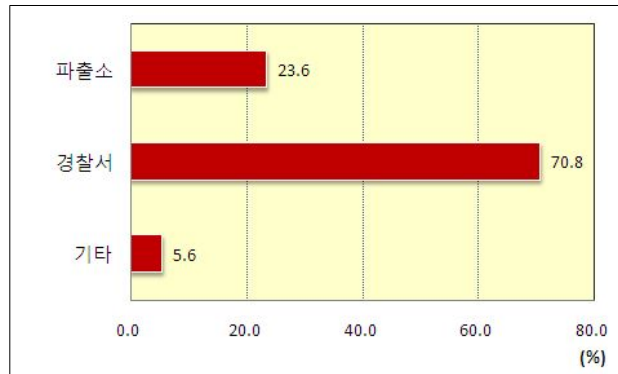
현재 경찰기관 즉 파출소나 경찰서에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통역담당 경찰공무원이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4.47] 통역담당 경찰공무원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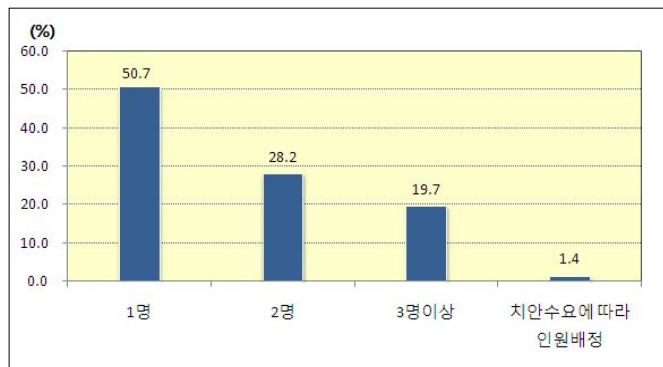
위의 [그림 4.47]에서 보듯이 현재 관할 경찰기관에 통역담당 경찰공무원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없다고 89.2%로 대다수 경찰관서에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역을 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그림 4.48] 향후 통역 담당 경찰공무원 배치 필요 기관



향후 통역담당 경찰공무원을 배치할 경우 경찰기관중 어느 부서에 배치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위의 [그림 4.48]은 경찰서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70.8%, 파출소 23.6%로 조사되었다. 경찰공무원들은 통역을 담당할 경찰공무원의 배치기관을 경찰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경찰서가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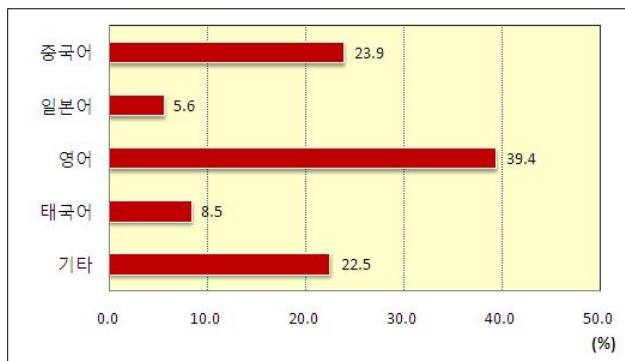
[그림 4.49] 필요한 통역 담당 경찰공무원 수



경찰서 등 경찰기관에 통역을 담당할 경찰공무원을 배치할 경우 필요인력에 대하여 각 경찰기관별로 1명이 필요하다는 50.7%, 2명 이상이 47.9%로 나타났다. 즉 경찰기관에 통역담당 필요인력에 대하여는 1인이나 2인 이상이나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통역 담당 경찰공무원을 배치할 경우 그 담당 언어에 대하여는 [그림 4.50]에서 보듯이 영어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4.50] 통역 담당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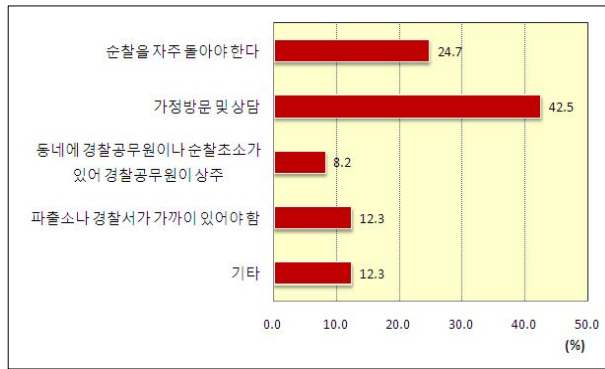


위의 [그림 4.50]에서 보면 필요한 통역 담당 언어로는 영어와 그 외 중국어가 23.9%, 태국어 8.5%로 나타났으며, 기타 언어로는 베트남어 및 두 가지 이상 언어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경찰의 변화 방향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은 경찰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방향에 대하여는 아래의 그림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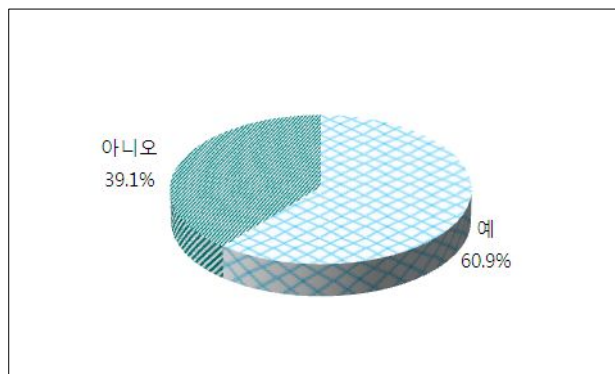
[그림 4.51] 경찰의 변화 방향



위의 [그림 4.51]에서 다문화가정내의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위한 경찰의 변화방법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방문 및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42.5%, 순찰을 자주 돌아야 한다가 24.7%, 파출소 등 경찰기관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가 12.3%, 경찰공무원이 그 지역에 상주해야 한다가 8.2%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공무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가정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경찰방문과 순찰을 들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가정방문과 순찰은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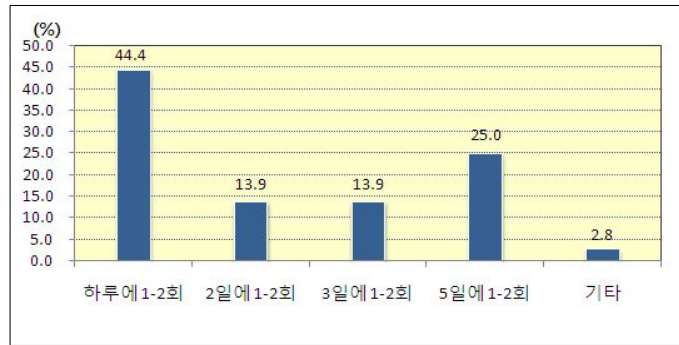
다) 다문화가정 지역 등에 대한 순찰

[그림 4.52] 다문화가정 지역내 순찰



위의 [그림 4.52]에서 보듯이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은 순찰을 돌고 있는가에 대하여 60.9%는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39.1%나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가정이 있는 지역에 대한 순찰이 일반적으로 강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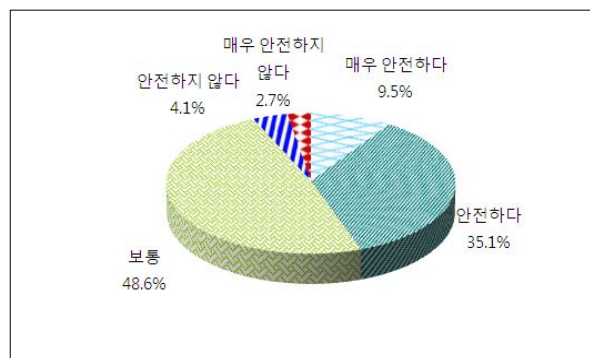
[그림 4.53] 순찰 횟수



위의 [그림 4.53]에서 보면 경찰공무원이 다문화가정이 있는 지역에 대한 순찰 횟수는 하루에 1-2회가 44.4%, 2일에 1-2회가 13.9%로 최소 1일에 1회 이상 순찰을 하는 경우가 58.3%로 나타났다. 그러나 5일에 1-2회 정도의 순찰하는 경우도 25.0%로 나타나고 있어 순찰의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다문화가정의 치안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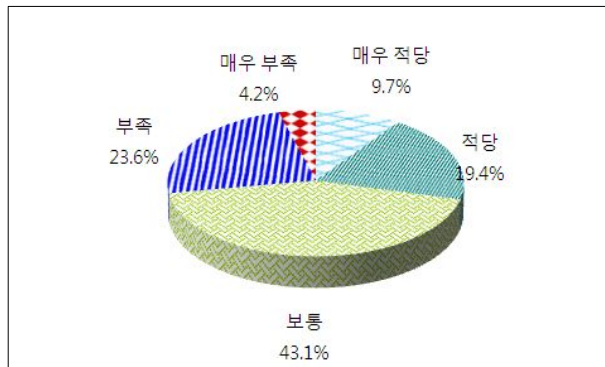
[그림 4.54] 다문화가정 거주지역의 치안



위의 [그림 4.54]에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범죄로부터의 안전한가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은 안전하다가 44.6%로 보고 있으며, 안전하지 않다가 6.8%로 평가하였다. 경찰공무원들이 보는 평가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대체로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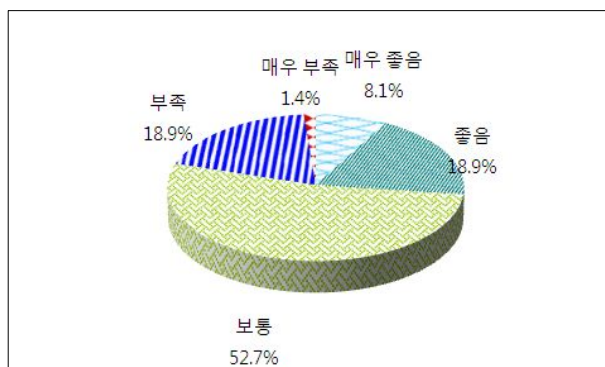
마) 경찰기관의 치안확보의 적정성 여부

[그림 4.55] 경찰서 등의 조직 적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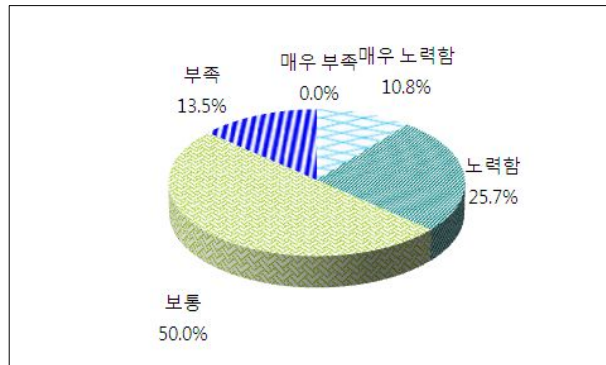
위의 [그림 4.55]에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및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의 파출소나 경찰서 조직이 적당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적당하다가 29.1%, 적당하지 않다가 27.8%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서 등의 조직이 치안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현재의 조직등의 적당성에 대한 평가에서 보통이 43.1%이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6] 치안활동의 적정성



다문화가정내의 가정폭력 및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및 치안을 위한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한 경우가 27.0%, 부정적인 응답이 20.3%로 나타났다. 또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은 52.7%로 나타나 현재의 경찰기관의 치안활동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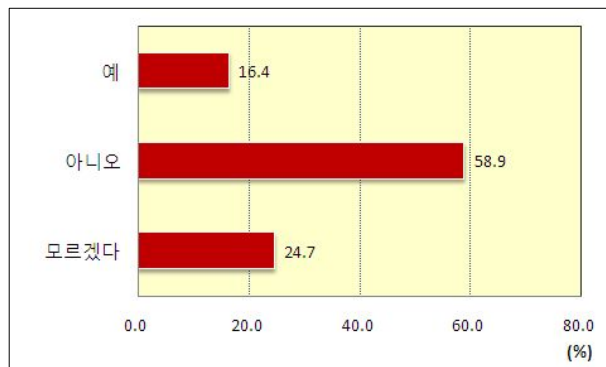
[그림 4.57] 경찰기관의 치안확보 노력



위의 [그림 4.57]에서 보면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기관이 다문화가정의 치안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다가 36.5%, 그렇지 않다가 13.5%로 노력하고 있다가 그렇지 않다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치안확보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경찰기관 등의 치안활동의 노력이 만족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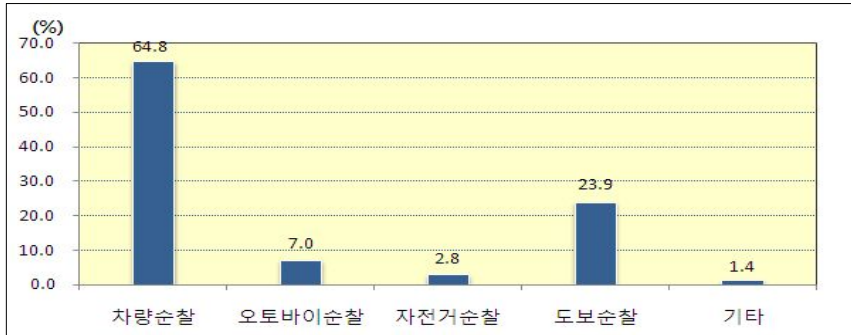
바) 치안활동 방법

[그림 4.58] 지역별 책임 담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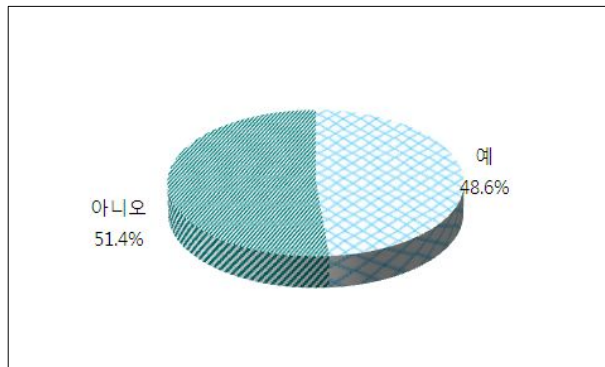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확보를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은 지역별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가 58.9%로 긍정적인 답을 한 16.4%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찰공무원들은 지역별 책임담당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자와 받는자간의 의식차이에서 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4.59] 순찰 방법



경찰공무원들이 치안확보를 위하여 순찰하는 방법에 대하여 차량순찰에 의하여야 한다가 64.8%로 도보순찰의 23.9%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현재 경찰공무원들은 치안활동을 위한 방법으로 과거의 도보순찰보다 차량에 의한 순찰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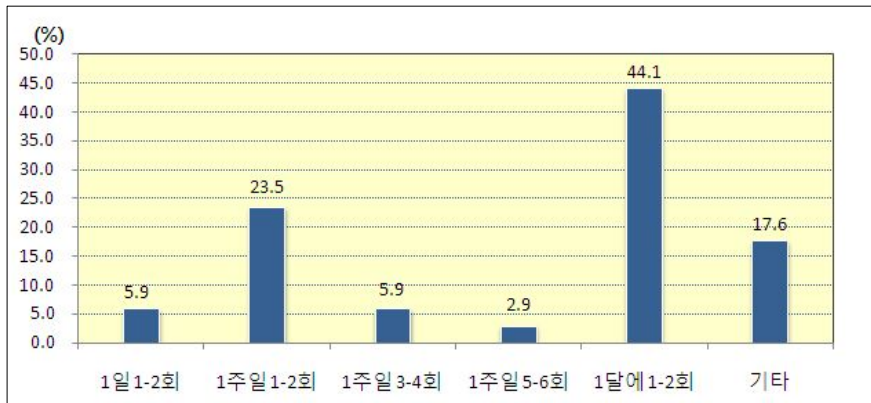
[그림 4.60] 경찰 방문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이나 그 자녀들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가정에 대한 경찰방

문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렇다가 48.6%인데 그렇지 않다가 51.4%로 부정적인 시각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경찰방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경찰공무원 상호간에 배치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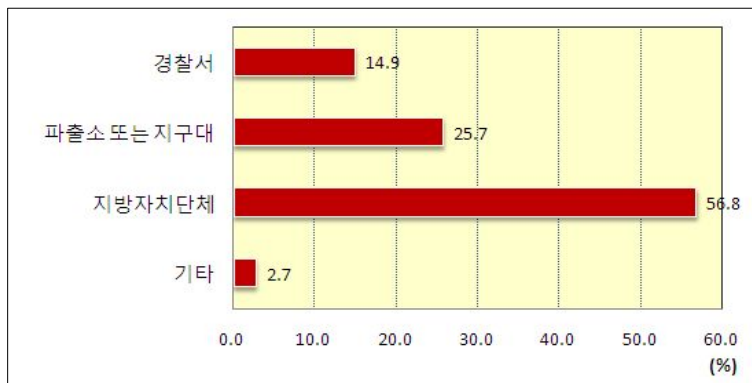
[그림 4.61] 경찰 방문 횟수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방문을 할 경우 방문 횟수에 대하여 1달에 1-2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44.1%인 반면 1주일에 1-2회가 23.5%로 나타났다. 대다수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찰방문의 횟수는 1주일에 1회 정도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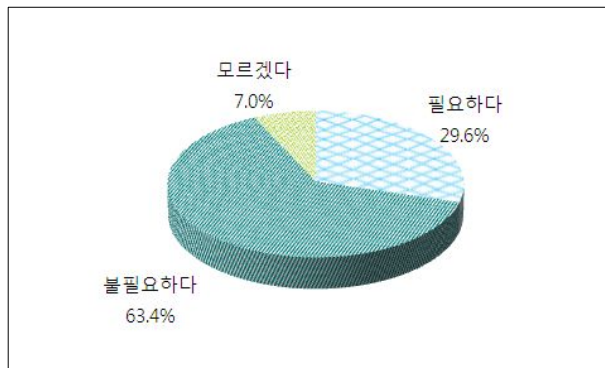
사) 치안확보 방안

[그림 4.62] 치안관리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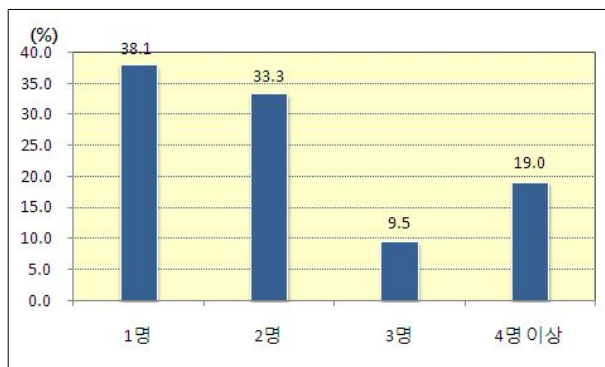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이나 그 자녀의 안전한 처안을 위하여 이들 가정에 대한 관리를 위한 적당한 기관으로 어느 기관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조사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기관이 40.6%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공무원 자신들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경찰기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63] 다문화가정 전담 경찰관제



위의 [그림 4.63]에서 볼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여성이나 자녀들의 처안확보를 위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담경찰관제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63.4%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담경찰관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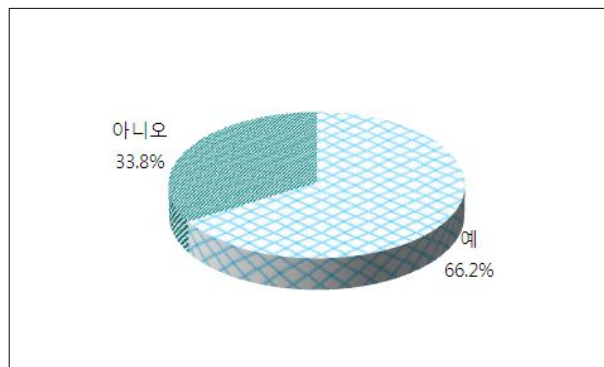
[그림 4.64] 전담경찰관의 필요인력



위의 [그림 4.64]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담경찰관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경우 그 필요인력에 대하여는 1명이 38.1%, 2명 33.3%로 나타나 71.4%가 2명이하의 범위에서 전담경찰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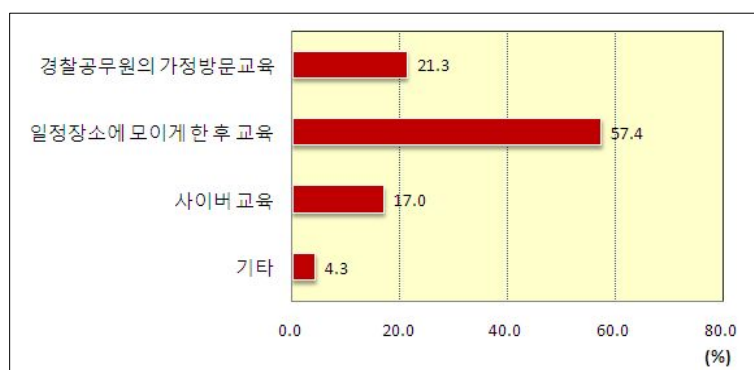
아) 치안교육

[그림 4.65] 치안교육의 필요성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이나 그 자녀들의 안전한 사회활동 등을 위하여 치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의 66.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대다수 경찰공무원은 치안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림 4.66] 교육방법



이러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교육방법에 대하여는 아래의 [그림 4.66]에서 나타내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이나 자녀들의 치안확보를 위하여 치안교육이 필요한 경우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에 대하여 일정장소에 모이게 하여 교육하는 방법이 57.4%, 경찰공무원의 가정 방문교육이 21.3%, 사이버 교육이 17.0%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공무원이 일정장소에 모아서 하고 있는 경찰서내에서 교육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공무원의 교육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은 경찰공무원과 다문화가정간의 일대일 방문교육이 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 결

다문화가정에 대한 외국인 여성의 인권침해와 그 자녀들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찰공무원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현재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특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의 업무 대응성이 낮아 통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량순찰을 통하여 치안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이 일반 가정들보다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리기관으로 책임인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경찰기관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치안교육의 방법에 대하여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통해 치안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선호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들도 이들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가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나 사회로부터 불안한 치안에 살지 않도록 경찰기관은 새로운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제5장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치안 역할 정립

제1절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역할의 기본방향

1. 경찰의 기본 역할

가. 경찰의 역할

경찰의 역할에 대하여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오고 있다. 경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경찰의 개념에 의한 경찰의 역할은 20세기를 거쳐 21세기에 오면서 지역사회 봉사자로서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다.⁵¹⁾ 이러한 경찰의 역할에 대하여 미국 변호사협회는 이를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있다.⁵²⁾ 미국 변호사협회가 제시한 정의는 첫째 범죄자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것, 둘째 예방순찰과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범죄의 실행기회를 감소시키는 것, 셋째 신체적인 피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넷째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 다섯째 사람의 이동과 차량의 소통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것과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섯째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일곱째 장래 중대한 범집행 또는 국가적 문제들을 찾아내는 것, 여덟째 지역사회의 안정감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것, 아홉째 시민질서를 증진시키고 유지하는 것, 열째 비상체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처럼 미국 변호사협회는 경찰이 담당할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역할은 우리의 경찰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51) Richard N. Holden, *Modern Police Management*, 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 1994, p. 29.

52)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5, 15쪽.

경찰도 역할에 있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직무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경찰의 일반적인 역할에 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역할은 국가내의 모든 국민과 외국인(치외법권자 제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질서유지를 위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사회내에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역할도 동일하게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업무로 경찰의 역할범위에 있다. 현재 경찰은 단순한 법집행뿐만 아니라 질서의 안정유지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사회변동에 따르는 환경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변화담당자로서의 기능 즉 주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⁵³⁾ 이제 과거의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변화의 주도적인 담당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질서유지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봉사자로서 찾아가는 경찰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사회내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이들이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

나. 경찰의 기본이념

경찰작용 및 경찰행정에 있어서 기본이념은 경찰행정이 지향해야할 궁극적인 방향으로 지도원리라고 한다. 이러한 기본이념은 각 국가의 경찰조직체제와 추구하는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경찰조직은 그 국가의 정치적·경제적·기술적인 요청에 대한 산물로서 그 구성원리도 국가마다 상이하다. 우리나라의 경찰행정의 기본이념은 경찰법에 의하여 민주성, 효율성, 정치적 중립성, 평등성을 들 수 있다.⁵⁴⁾

특히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민주성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민주성에

53) 동지:이황우, 앞의 책, 19쪽.

54) 중앙경찰학교, 경찰작용법, 2007, 25쪽:이황우, 앞의 책, 24쪽.

의해 경찰행정의 책임행정이 도출된다. 책임행정은 경찰 조직뿐만 아니라 경찰작용에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 또한 경찰의 효율성은 적은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위한 것으로 경찰행정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치안확보를 담당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조직은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획일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효율성은 사회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자칫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민주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등성을 기본이념으로 두고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및 경찰수요자에 대하여 동등한 경찰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은 천부적인 기본권으로 경찰업무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에 의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더 많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도 우리사회내의 한 국민으로서 또는 한 인격체로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당연한 경찰의 역할이 된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에 대하여 경찰의 기본이념과 경찰의 역할에 의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는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은 일반 국민보다는 사회적 약자로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2. 경찰의 체계 정립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기본방향으로서 조직체계, 인력체계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경찰의 역할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내부의 체계정립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체계 및 인력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조직체계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치안확립을 위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찰조직체계를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조직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국가경찰조직체계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 업무의 획일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조직의 구성체계를 다문화가정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1) 파출소 및 지구대 증설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의 치안확보를 위하여 치안일선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경찰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관할 파출소와의 거리가 도보로 30분 이내에 있는 경우가 26.3%로 나타나고 있어 파출소가 신속히 그리고 가까이 접근하여 치안활동을 펼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파출소 등의 경찰조직이 치안확보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은 20.3%만이 적당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경찰관들은 29.1%가 적당하다고 평가하여 설문응답자의 대다수는 현재의 경찰조직체계가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경찰부서중 파출소와 지구대는 가장 현장에 가까이 있는 기구로서 접근성과 신속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어촌의 경우는 파출소체제를 좀 더 증설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지역의 경우는 지구대를 증설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⁵⁵⁾ 파출소 및 지구대를 증설하는 것은 경찰의 인력부족과 예산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조직체계도 지역실정에 맞게 일괄적인 파출소체제가 아닌 세분화된 작은 소규모의 파출소나 지구대제도를 면단위나 주요동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치안수요자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경찰조직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내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경찰의 본연의 업무이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요구에 대응하여 경찰조

55)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경찰서 235개, 지구대 826개, 파출소 528개소를 두고 있다: <http://www.police.go.kr/main/index.do>.

직체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정립을 위하여 첫째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조직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소규모의 파출소체제를 도입하여, 2-5명이 거주하는 소형 파출소제도나, 10-15인이 근무하는 지구대를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이 많은 지역의 경찰서에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 및 자녀들의 치안을 위하여 계단위의 조직체계를 두어 집중성과 선택성에 따른 치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상주 가능한 치안센터 도입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역할은 단순히 질서유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 속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이 증대해 가고 있다. 과거 경찰의 역할이 단순한 소극적인 목적에서 현대는 봉사하는 경찰 지역에 부합하는 경찰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의해 우리 경찰도 다양한 경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방문 및 치안교육 등 찾아가는 경찰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찰의 체제도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역할은 매우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다. 사회적약자인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을 경우 향후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이고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제도입이 절실하다.

일본의 경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상호부조와 공동체의식 속에서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交番제도를 두고 있다.⁵⁶⁾ 교번은 지역내의 치안유지를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이며, 경찰관은 지역의 작은 파출소인 교번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내 거주하여, 지역민과 함께 치안업무를 수행하므로 접근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 특징을 두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다문화가정 및 중대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경미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인 약자가 거주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는 상주가 가

56) 久保博司, 日本警察, 講談社, 1998, p. 26이하 참조.

능한 치안센터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접근성 등을 보장할 수 있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다문화가정이 도시와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일본의 교변과 같은 제도는 도시 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인력체계

1) 전문 통역 경찰관제 도입

다문화가정내에서 치안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과의 의사소통이 되질 않아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은 우리나라에 이주해와 우리 언어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 범죄 등 인권침해를 당해도 이를 경찰기관 등에 적절히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통역을 해줄 전담경찰관이 없어 정확한 의사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찰서 및 지구대에 통역을 담당해줄 경찰관이 없는 경우가 89.2%로 조사되어 대다수 경찰서 및 지구대에는 통역요원이 없는 실정이다. 설문조사에서 경찰관의 53.4%는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받더라도 적절한 신고 및 대응체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의 신고 등에 따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통역 담당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서비스제공과 치안유지를 위해서 경찰의 인력체계가 전문화되고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

즉 도시지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확보를 위하여 경찰서별로 통역전문경찰관을 두어야 하나, 농어촌지역의 경우는 경찰서와 다문화가정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지구대나 파출소 단위로 통역경찰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함과 함께 침해시 발생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통역을 할 수 있는 경찰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경찰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치안책임을 가지며,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줄 의무가 있다. 치안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특성화된 경찰체계가 필요하다.

2) 다문화가정 책임 전담 경찰관제 도입

현대사회는 경찰업무도 시대와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시대와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 경찰조직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우리 경찰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업무의 효율화 달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범죄에 따른 부서를 창설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가정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매년 증가하여 향후 사회적인 치안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부족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빠른 치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극적인 경찰에서 벗어나 치안서비스를 주는 경찰로 전환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치안서비스와 치안확보를 위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책임 경찰관제를 도입하여 지역의 치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사회경찰이 현재 부각되고 있으며, 경찰의 업무가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현재는 적극적인 자세를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⁵⁷⁾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보호와 치안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 경찰의 업무는 형평성에 기해 이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담 할 수 있는 경찰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치안서비스도 맞춤형 시대가 도래하였으므로, 과거의 획일적인 경찰관제도에서 벗어나 특화된 경찰관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법제도적 근거 확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는 최근에 매우 주목을 받고 있다.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우리사회는 이제 타인이 아닌 우리 사회구성원의 관점을 가지

57) 이황우, 앞의 책, 19쪽 이하 참조.

고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여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형평성의 문제와 우리사회내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장 없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려만은 역차별이라는 논란에 의해 아직 정립이 되지 못하였다.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2007년 5월 14일 제정되어 우리나라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차별 없는 처우를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였다.⁵⁸⁾ 동법은 우리나라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 기본법으로 성립하였으며, 관련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서 정할 경우는 동법에 부합하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은 우리나라내에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동법은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이주여성도 포함하여 보호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에 사회적 보호와 치안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개별법률과 경찰기관의 사무규칙으로 보호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업무집행 등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58)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그리고 기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의한 업무범위에 한 부분으로서 경찰방문과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근거조항으로 보고 있다.

즉 사회적인 약자인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개별적 수권조항이나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하여 경찰력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현행 법체계상에서 경찰력을 발동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 확보를 할 의무가 경찰에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법률을 제정하기 전이라 하여도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하여 경찰력을 발동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한 치안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은 합리적 차별사유가 있으면 차별화 할 수 있는 평등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하여는 균등한 치안서비스만을 가지고는 이를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차별화된 치안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에 의해 향후 법집행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절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역할

1.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 활동

다문화가정내의 가정폭력과 사회외적인 요인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자구책을 가지고는 해결이 어렵다.⁵⁹⁾ 현재 외국인 이주자를 위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59) 다문화가정내의 가정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주여성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이주여성 전용 쉼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6년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에 21개소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어·가족·문화이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기초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적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2006년 10월 31일에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제한하지 않는 한

있다. 이처럼 외국인 특히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 경찰의 역할 변화

1) 경찰의 개념 변화

기존의 경찰의 개념은 독일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이후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의미로 한정되어 인정하여 오고 있다.⁶⁰⁾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목적이 현대 경찰의 개념에 부합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 현대 경찰은 국가 통치권하에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작용을 가지는 권력작용이 주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는 서비스적인 활동이 주된 목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영미경찰의 개념이 점차 도입되면서 과거의 권력적인 경찰에서 국민에 다가가는 즉 주민의 지역정서에 부합하고 봉사하는 개념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우리 1991년 제정된 경찰법에서도 경찰의 봉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경찰서비스현장 등에서도 경찰의 봉사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하에 2006년 7월 1일자로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제도의 변화가 찾아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기존의 국가경찰의 권력적인 작용보다 지역치안유지를 위한 범질서 작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권력작용과 아울러 비권력 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⁶¹⁾ 이는 경찰이 그 지역의 정서에 부합되고 지역의 치안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범위에서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경찰의 개념에서 벗어나 경찰의 개념은 봉사성을 주로 하는 지역민과 국민에 다가가는 즉 찾아가는 경찰의 개념으로 새로이 변화되어야 한다. 최근 지역사회경찰

거주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지자체는 거주외국인 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0) 김철용, 행정법II, 243쪽;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8, 1219쪽.

61) 김원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역할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7권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154쪽.

활동은 지역, 지역민과 경찰이 함께 치안활동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가져 안전한 사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이 치안을 확보하려면 지역과 지역민의 치안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사전에 치안을 확보하도록 하여 침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역할

다문화가정내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및 학교내의 인권침해 양상은 일반적인 한국인 가정보다 심각한 실정에 있다. 통계수치에 의하면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그 실상을 보면 주로 농어촌지역이라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생활하고 폐쇄성으로 암수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침해문제에 대하여 제도기관 특히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아직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성을 가진 가족들에 대하여 특별히 일반적인 치안활동과 차별화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경찰청 통계자료에서도 아직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계치는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국제범죄와 국내범죄로 구분하여 통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위하여 성폭력사범과 가정폭력 사범 등에 대한 2006년 가정폭력은 2005년에 비해 16%감소한 12,775명의 가정폭력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⁶²⁾ 또한 대여성·아동범죄 근절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경기동수사대를 활성화 시켰으며, 여성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 학교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스톱(ONE-STOP)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여성과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24시간 무료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찰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특성화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성을 아직 배려하여 이들에 대한 치안확보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나. 지역사회 경찰활동 강화

1) 지역주민의 치안 참여

과거의 전체적인 경찰활동에서 현재는 문제중심 그리고 지역중심 경찰활동인 지역사회

62) 경찰청, 경찰백서, 2007, 187쪽.

경찰활동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 켈링과 무어는 1988년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주창하였다.⁶³⁾ 향후 21세기는 문제중심의 지역중심에 따른 경찰활동이 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내의 조직은 서로를 상호 감시하게 조직되고 지역 순찰대를 조직하여 방법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범죄를 줄여 나갈 수 있다. 즉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공간에 대하여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범죄를 용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구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⁶⁴⁾ 이러한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은 지역에 대한 전문가가 될 것이고, 또한 지역주민을 치안활동에 참여시켜 치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교육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하여 나갈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내의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찰의 개념인 직접 사회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명령·강제하는 행정경찰작용에 한정하여 생각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에 따라 다문화가정 등의 안전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에 함께 거주하는 지역민에 대하여 치안활동에 참여시켜 치안교육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찰과 함께 다문화가정을 지키기 위한 '지킴이 제도' 등을 도입하여 지역민을 치안 현장에 참여시켜야 한다.⁶⁵⁾

2)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 교육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과 함께 범죄로부터 취약한 사회적 약자 즉 치안약자들에 대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일환으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치안교육은 범죄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안전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경찰의 치안교육은 범죄로부터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경찰의 범죄활동중 현장을 찾아가 교육하는 현장치안교육은 그 효과가 매우 높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교육에 대하여

63) Kelling, G.L., and M. H. Moore. *The evolving strategy of policing*. Perspectives on Policing, no. 4, 1988, pp. 1-15.

64) 양문승 역,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대영문화사, 2001, 270쪽.

65) 경찰은 2005년에 전국 69개 경찰서에 시민 경찰학교를 운영하여 2,426명을 교육하여 치안현장 체험을 통해 경찰업무의 이해 및 신뢰감의 증진에 노력하여 '민·경 협력치안의 장'을 마련하려 노력하고 있다:경찰청, 경찰백서, 2007, 176쪽.

그 필요성을 경찰관 스스로 높게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 설문조사 대상자의 66.2%가 치안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경찰관 자신들도 치안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치안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들에 대한 치안교육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치안교육을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 방식은 경찰이 찾아가는 교육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은 우리 사회의 실정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다문화가정이 있는 지역을 순회 방문하여 1:1의 교육이나 지역에 모이게 하여 집단 교육방식 등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의 효과에서는 맞춤형 교육인 1:1의 교육과 그들이 필요로 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에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경찰의 교육도 특성화되고 맞춤형식의 교육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경찰방문 강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들은 언어소통의 문제와 문화의 차이 그리고 한국 사회체계의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행정기관 등과의 접근이 어려웠다. 이러한 행정기관 등의 소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찰긴급권이나 경찰개입청구권을 발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다문화가정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경찰은 본연의 업무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치안대비를 위하여 지역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방문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경찰방문은 치안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문제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제도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방문은 다른 경찰활동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51.8%가 경찰방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은 경찰관들이 자신들을 방문하여 치안문제를 상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안전한 치안확보를 위하여 경찰활동도 찾아가는 경찰방문의 형태를 가지고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치안확립 동반자로서의 경찰

경찰의 개념과 경찰활동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단순한 소극적인 목적의 활동에 한정하여 경찰의 개념을 볼 수 없으며, 또한 경찰활동도 국민에 대하여 명령·강제하는 작용에 한정하여 보는 것은 역사적 개념을 가진 경찰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대 사회는 첨단사회로 국민들의 요구는 정부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복지국가를 지향하도록 하는데 있다. 경찰의 경우 국민에 대하여 명령하고 강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도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찰서비스현장이나 경찰의 역할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치안확립의 최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에 의해 지역에 적합한 경찰 그리고 지역민에 봉사하는 경찰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 현 시대적 사명이며,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치안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경찰도 그에 부합하는 제도와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찰의 사무도 권력적인 것이 아닌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무가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봉사자로서 치안확립을 위하여 경찰은 치안을 지역주민과 함께 수행하는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지 독자적으로 치안확립을 전개해 나갈 수 없다.

최근의 범죄발생에 따른 검거현상과 치안활동을 보면 이제 경찰은 치안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단독으로 치안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치경찰의 도입 등에 따라 경찰의 지위는 봉사자로서 치안동반자로서의 지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2.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경찰 활동

가. 학생들의 치안참여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집단 따돌림 등에 의한 인권적인 침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자녀가 있는 각 학교에 경찰은 치안활동 교육을 실시할 필

요가 있다. 학교내에서의 안전한 생활과 학교생활의 적응은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화되어 가기 위한 전 단계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자녀가 있는 각 학교의 학생들의 일부를 학교내 다문화가정자녀를 돌보고, 치안참여자로 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

단순히 침해행위에 의해 경찰개입청구권이 발동된 경우에 경찰이 개입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경찰업무가 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학교생활을 원활히 하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있는 일반 가정의 학생들을 치안활동자로 정하여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일반가정의 학생이 함께 하는 동반자로서의 상호 역할을 가지게 다문화가정 학생 1인과 일반가정 학생 1인을 하나의 구성체로 연결하여 서로 돌보아 주는 책임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전담 경찰관제

다문화가정자녀의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갈등에 의해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외톨이로서 소외될 경우 이들은 향후 우리 사회의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 통합을 위하여 취학 전과 취학 후 특히 학교생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 대한 여러 활동을 펼쳐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활동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전담 경찰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담 경찰관제를 지역별 특히 지구대별로 지정하여 시행할 경우 경찰의 봉사성과 민주성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자녀가 사회구성원으로 자라 안전한 치안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학교내의 교육체계 확립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등에 대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를 없애기 위하여 학교 당국의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내에서의 교육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방법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과 이론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내용으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와 사회는 이들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적 방안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대하여 국가 및 사회는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능력을 존중하여 한국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동법에서의 재한외국인에는 동법 제2조의 정의에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정하고 있어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들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동법에 의하여 외국인 여성에 대한 기본권보호와 함께 이들의 개인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또한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 발휘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진

다.⁶⁶⁾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위하여 동법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치안역할을 가진다. 이러한 치안역할에는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역할과 경찰의 치안협조자 즉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역할

가. 주민의 권리로서의 안전권

지방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은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1항은 주민의 권리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혜권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혜권은⁶⁷⁾ 재산 및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권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할 의무를 지며, 또한 주민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하여 혜택을

66) 행정안전부는 2006년 10월 31일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다. 동조례안 제1조는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동조례안 제6조는 ‘지원의 범위’로서 제1항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동조례안 제2호의 고충 상담 및 응급구호 등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치안역할을 일부 즉 권력적 행위가 아닌 범위내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역할을 정할 필요가 있다.

67) 이러한 수혜권을 수급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김철용, 행정법Ⅱ, 69쪽).

받을 권리 즉 수익권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⁶⁸⁾ 이처럼 한국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도 지역의 주민으로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작용에 대하여 수익권을 가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외국인 여성들에 대하여 모든 행정작용에 있어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는 단순한 수익작용인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안전한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안전권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즉 안전권으로서 개인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이 그 지역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작용을 할 의무가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사무

1) 사무범위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8조와 제9조에서 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은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의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원칙으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는 제8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사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의 제2호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정하고 있다.⁶⁹⁾ 동법 제9조의 제2항 제2호의 가에서 라까지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

68) 앞의 책, 70쪽.

69)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 인·청소년 및 부녀(婦女)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권을 가지며, 그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모든 혜택을 부여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법 근거에 의하여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며,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동법 제9조에서 예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사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⁷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 대하여 주민의 권리로서 주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2) 치안업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치사무권을 가지며, 이러한 자치사무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권의 하나로 자치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자치행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담당할 사무범위를 정하고 그 사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권한을 말하며, 이러한 권한에는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권력작용과 함께 비권력작용을 행사할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자치권은 발동대상이 일반적이고 발동의 형식이나 과정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이다. 또한 자치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넓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만 제한할 수 있다.⁷¹⁾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에 의하여 지역민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의무를

70) 지방자치법 제9조의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예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자치사무만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위임사무까지 동시에 규정한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바,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와 동법 제9조의 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만을 볼 것인지 단체위임사무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은 지방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위임사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편의상 위임사무로 보는 것이고,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주기 위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하면 되는 것으로 위임사무까지 예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데 동의하며, 또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상의 지방자치법을 둔 의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71) 홍정선, 행정법특강, 2008, 846-847쪽.

가지며, 고유의 사무로 경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권은 국가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예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권력작용이 아닌 주민에 대하여 이익을 주는 복지차원의 보호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권으로서 자치행정권에 의해 도출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보호권은 제1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며, 권력적인 경찰작용을 수행할 경우에만 제2차적으로 국가의 경찰권에 의해 발동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과 자치권에 의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을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무를 가지며,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권력적인 작용인 수익적 작용으로서의 안전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며 의무로 보아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외국인 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한 안전한 생활권에 대한 책임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경찰공무원 56.8%였다. 경찰공무원들도 지역내의 주민에 대한 책임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치안문제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

2.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역할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들의 상당수가 가정내의 폭력과 사회의 냉대에 의해 인권적 침해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의 자녀도 피부색과 문화 그리고 언어의 이질성 등에 의해 학교 등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즉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의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

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10조의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등에 대하여 인권침해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정립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 법률에서 경찰사무는 국가 행정사무로 보고 있어 권력적인 작용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침해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직접적인 권력적인 경찰작용이 아닌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1) 경찰방문 활동

다문화가정내의 가정폭력은 외국인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발생하며 이들은 그 피해를 경찰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국민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등이 발생한 후에 통제하는 것보다 경찰상 범죄를 사전에 통제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경찰활동 및 개인의 인권을 위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찰활동을 하는 것이 생활안전경찰활동이다. 생활안전경찰은 지역경찰관의 일상근무를 통해 직접 주민과 접촉하면서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으며, 범죄예방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는데 직결되고 경찰과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⁷²⁾ 이와 같은 생활안전경찰은 현재 국가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공동체와 공동으로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도 비권력적인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도계몽과 상담 및 상호 연락 등을 행하여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 책임공무원제

다문화가정내에 대한 인권침해현상은 더 이상 방관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며, 우리 국가의 인권 사각지대로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해 지방자치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에서 외국인 여성 등에 대한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72) 이황우, 경찰행정학, 526쪽.

다문화가정내의 인권침해는 한국 사회내의 소수자로서 총체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며, 외국인 여성에 대한 부부간, 고부간의 문제 및 자녀의 교육 문제 등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처지에 일상으로 노출되어 있어 상담이 필요하다.⁷³⁾고 보고 있다. 이러한 상담문제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충에 대하여 미리 파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지방자치법 제9조의 제2항 제2호의 라항의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책무조항으로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공무원에 대하여 책임전담제를 시행하여 각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치가 될 수 있다.

3) 교육프로그램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과 그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구성원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그 외국인 여성과 자녀 등이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할 책무를 가진다. 이는 위의 예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법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 근거조항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적 지원으로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언어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⁷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우리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다문화가정을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73) 손현숙·박세정,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3쪽.

74) 앞의 글, 14-15쪽.

나. 치안협력자로서의 역할

경찰사무는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중앙집권에서 1991년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행정사무에 대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다. 경찰사무도 자치경찰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으며,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으나 17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자동폐기되어 새로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2006년 7월 1일 자치경찰이 협의적 행정경찰사무에 한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다.⁷⁵⁾

지방자치단체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기관과 함께 동반자 즉 협력자로서의 치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경찰기관의 보조자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의 치안문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력적 경찰작용을 담당할 수 없으나 치안업무에 대하여 해당 경찰기관과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경찰사무의 주된 기관은 국가경찰이므로 국가경찰과 협력하여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민에 대한 보호차원의 경찰작용을 협약사무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사무로서 국가경찰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문제를 협력하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비권력적 작용에 대한 경찰과의 협력사무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75)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여 고유사무와 협약사무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목표는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제주를 조성하며, 주민의사에 부응하는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임무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는 안전과 편안 그리고 봉사를 그 이념으로 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협의적 의미의 행정경찰로서의 사무를 고유사무로 구분하고 국가경찰기관등과 협력하에 하는 치안질서유지 업무를 협약사무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하면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는 주로 고유사무와 협약사무를 구분하지 않고 제주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김원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역할 검토”, 162쪽).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경찰과 협력자로서의 지위에 의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다.

2) 지역사회경찰활동 강화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내의 조직은 서로를 상호 감시하게 조직되고 지역 순찰대를 조직하여 방범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범죄를 줄여 나갈 수 있다. 즉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공간에 대하여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범죄를 용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⁷⁶⁾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사후 대처적인 활동으로부터 지역내의 여러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사전예방적인 활동으로 범집행보다는 주민에 대한 봉사하는 임무가 더 중요시되는 활동이다. 또한 주민도 경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경찰과 공동으로 책임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봉사적인 의미가 강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사회라는 공간으로 이끌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여 함께 사는 지역민의 의식을 가지도록 한다. 이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며, 지역민의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하여 첫째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의 참여, 둘째 다문화가정이 속한 지역 주민의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성원 참여 등에 의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76) 양문승 역,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270쪽.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도시화의 물결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집중화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도시라는 블랙홀에 의해 농촌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와 함께 농촌결혼적령기의 인구 감소는 새로운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와 인종이 다른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 단순히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나온 이 같은 현상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농촌총각으로 이주해온 외국인 여성들은 새로운 사회와 문화의 접촉에 의한 갈등현상으로 인한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우리사회는 외국여성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결혼이라는 목표만을 위해 받아들인 외국여성에 대하여 인격침해라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접촉이 서서히 이루어져야 하나 단기간 만남에 의해 결혼을 통한 한국으로 이주는 사회문화갈등과 함께 인권침해를 가져왔다. 외국인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이해부족은 외국여성을 고립시켰으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사회에 대한 적응력 기회부족과 결핍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에 의해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사회는 이제 단일국가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자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가져야 한다. 농촌총각들의 결혼에 의해 이주해온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그들의 자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적응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로서 지역민에 대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역할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가는 다문화라는 틀 속에서 우리문화를 가지고, 타문화를 인정해주는 사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가정내의 외국인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은 우리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어의 상이함과 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생활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문제도 일반 우리 국민들의 가정생활에서 받는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선 경찰기관인 지구대나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의 약 50%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받아 신고하여 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의 조사결과에서도 47%가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은 사회적 약자인 치안약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치안약자들에 대하여 경찰은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치안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찰만이 치안책임자로서의 책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치안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는 국가만의 몫이 아니라 1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주민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을 이루어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하여 안전한 사회활동과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에 대한 치안역할로서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들에 대한 사전교육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문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특히 치안문제에 있어서 경찰사무는 국가가 가져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찰사무에 대하여 협력자로서의 지위로 협약사무로 조례 등에 의해 정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치안활동을 비권력적 활동으로 펼쳐야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치안역할은 이제 국민에 대한 치안 서비스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경찰의 개념은 과거의 소극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와 환경에 변화되게 적극적인 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의 역할이 찾아가는 치안업무를 담당하며,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경찰 방문제와 책임경찰관제 그리고 특성화된 통역 전담경찰공무원제도를 도입할 시기에 와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치안약자들에 대한 특별

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치안에 대한 업무는 경찰만의 몫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조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분배와 효율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치안협력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경찰과 공동 책임을 부담하여 안전한 사회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2절 정책 제언

급변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의 역할은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필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세계화와 개방화에 따라 더 이상 단일민족과 문화만을 고집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의 치안수요도 다양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치안약자로 볼 수 있는 다문화가정 내의 외국인 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인 제도와 경찰의 활동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경찰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해 본다.

첫째,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을 할 수 있는 통역 경찰관을 채용하여야 한다.

둘째, 경찰방문으로 다문화가정에 찾아가서 상담하고 방법활동을 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주기적 경찰방문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에 상주할 수 있는 소규모의 파출소(경찰관 2-5인 내외 근무)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다문화가정 1가구와 경찰관 1인이 책임을 가지고 치안역할을 할 수 있는 1:1 책임경찰관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교육의 강화이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안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책임을 연계하여 담당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일곱째, 경찰내부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치안확립을 위한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여덟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안전한 사회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학교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책임교사제나 같은 학교 학생을 한조로 묶어 학생공동체 등을 형성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찰의 역할은 차별화할 수 있으면 차별화하여야 하는 평등성의 원칙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에 따라 더욱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위의 여러 가지 정책 제언들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여성과 자녀와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와 문화가 정비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철용, 행정법Ⅱ, 박영사, 2008.
- 박근성,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8.
-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5.
- 정진환,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8.
-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2008.
-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1998.
- 경찰청, 경찰백서, 2007.
- 통계청, 인구동태(혼인), 2007.
- 통계청, 국제결혼 이혼통계, 2007.
-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9.
- 강신임,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교육의 과제, 대학원연구논집 제28집, 동국대학교, 1998.
- 고숙희, 외국인 결혼이민자의 다문화사회 접근전략에 대한 태도, 세명논총 제14집, 세명대학교, 2007.
- 김시홍, 이탈리아의 이민과 다문화주의, 국제지역연구 제9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 김영옥, 새로운 '시민들'의 등장과 다문화주의 논의, 아시아여성연구 제46권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7.
- 김원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의 특성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2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12. 25.
- 김홍운·김두정,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교육적 과제, 인문학연구 제34권3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 김형인, 미국의 정체성 10가지 코드로 미국을 말한다, 살림, 2003.
- 김형인, 미국의 다문화주의의 향방:세계화와 9·11의 여파, 국제지역연구 제11권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 박이문, 다문화주의, 철학과현실, 봄호, 2002.

- 박정희, 한국사회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현황, 국제문화연구, 제26집, 청주대학교, 2007.
- 손현숙·박세정,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이공대학논문집 제36집, 2007.
- 양문승 역, 지역사회 경찰활동론, 대영문화사, 2001
- 오진환, 조례의 무효와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특별법연구, 특별소송실무연구회 제5권, 1997.
- 오준근,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각종 특별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약간의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제6권 제1호, 2006. 6. 25.
- 이기우,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의 개요”, 자치발전, 제9권, 2003.
- 조상균·이승우·전진희,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1호, 2007.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 자료, 2007.
-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200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전국 가정폭력·성폭력 실태조사, 2008.
- 경향신문, 2008.4.29일자.
- <http://kosis.kr/OLAP/Analysis>
- <http://news.khan.co.kr/kh-news>
- <http://www.police.go.kr/main/index.do>
- Kelling, G.L., and M. H. Moore. The evolving strategy of policing, Perspectives on Policing, no. 4, 1988
- Charles R. Swanson, Leonard Territo, Robert W. Taylor, Police Administration, Prentice Hall, 2001.
- Martikainen, Tuomas, Relation, Immigrants and Integration, AMID Working Paper Series, 2005.
- Parekh, Bhikhu, Political Theory and the Multicultural Society, 1999.
- Richard N. Holden, Modern Police Management, 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 1994.
- 久保博司, 日本警察, 講談社, 1998.

부 록 1

다문화 가정 치안 실태조사

(외국인 여성)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로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치안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안환경을 변화시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제로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경찰의 치안활동을 위한 역할’ 등에 대하여 여러분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경찰의 치안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여러분의 안전한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내용은 연구의 통계자료로만 이용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586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연락처 : 김 원 중 교수

전 화 : 043-229-8989 팩스:043-229-8210

이메일 : k-won-j@hanmail.net

k-won-j@cju.ac.kr

Ⅱ. 가정폭력 발생 관련 사항

1. 한국으로 결혼하여 이민 온 후 가정내에서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1-1번으로 가세요)
 - ② 없다(IV.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기관에 신고 및 상담으로 가세요)
- 1-1. 가정내에서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몇 번이나 당하셨습니까?
 - ① 1주일에 1번이나 2번 ② 1주일에 3번이나 4번
 - ③ 매일 ④ 1달에 1번 또는 2번
- 1-2. 가정내에서 어떻게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합니까?
 - ① 신체적 폭행 ② 심한욕설 ③ 물건을 던지는등 위협
 - ④ 흉기등을 이용한 신체 훼손 ⑤ 성학대 ⑥ 기타()
- 1-3. 가정내에서 폭력은 주로 누가 합니까?
 - ① 남편 ② 남편의 부모 ③ 남편의 형제자매 ④ 기타()
- 1-4. 가정내에서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처음보다 그 횟수와 폭력양상이 변화가 있습니까?
 - ① 처음과 같다 ② 처음보다 줄었다 ③ 처음보다 늘었다 ④ 기타()
- 1-5. 가정내에서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 그냥 참는다 ② 같이 싸운다 ③ 다른사람에게 말려달라고 요청한다
 - ④ 경찰이나 공공기관에 신고한다 ⑤ 다른데로 몸을 피한다 ⑥기타()
- 1-6. 가정 내에서 폭력이 이루어질때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신후 취한 상태에서 합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③기타()

Ⅲ.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

1.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받은 신체적인 피해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 ① 가벼운 멍이나 긁힘등의 상처 ② 뼈가 부러짐 ③ 유산 등 수술 필요
④ 고막이 터지거나 이가 부러짐 ⑤ 기타()

2. 가정내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후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2-1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3번으로 가세요)

2-1. 가정내 폭력이나 인권침해후 병원치료를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

- ①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할때마다 ② 가끔씩

3. 가정내 폭력이나 인권침해로 인한 심리적 증상은 어떻습니까?

- ①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다 ② 그냥참고 살아야 한다
③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한 자에 대하여 보복하고 싶다 ④ 자살하고 싶다
⑤ 불면증 등에 시달린다 ⑥ 폭력에 대하여 항상 불안에 뜬다

4. 가정내 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하여 상담이나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4-1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

4-1. 상담이나 신고한 경우 어디에 했습니까?

- ① 가족 구성원 ② 이웃주민 ③ 같은 외국인주 여성 ④ 사회복지사
⑤ 기타()

IV.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기관에 신고 및 상담기관

1.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지역 경찰공무원이나 파출소 등에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1-1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2번으로 가세요)

1-1. 경찰공무원이나 파출소 등에 신고를 한 경우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 ①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할때마다 ② 너무 심하게 폭력 등을 행사할 때
③ 가끔씩

2. 가정내 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할 때 경찰공무원이나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폭력 등이 심하지 않아서 ② 신고방법을 몰라서 ③ 파출소 등이 멀어서
④ 신고해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서

3. 귀하가 사시는 곳에 파출소나 경찰서 등이 가까이 있습니까?

- ① 가까이 있다 ② 보통 ③ 멀리 있다(3-1번으로 가세요)

3-1. 귀하가 사시는 곳에서 파출소나 경찰서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 ① 걸어서 20분내 ② 걸어서 30분내
③ 걸어서 40분내 ④ 걸어서 1시간내 ⑤ 기타()

4. 귀하가 사시는 곳에 경찰공무원이 순찰을 자주 다닙니까?

- ① 그렇다 ② 보통 ③ 그렇지 않다

5. 경찰공무원이 순찰을 오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1주일에 1-2회 ② 1개월에 1-2회 ③ 1개월에 3-4회 ④기타()

6. 경찰공무원이나 파출소 등의 기관이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도움이 됩니까?
-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
④ 도움이 안된다 ⑤ 매우 도움이 안된다
7. 가정폭력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경찰공무원이나 파출소 등의 기관이 도움이 안되는 경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① 의사소통이 안되어 경찰공무원등이 제대로 피해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② 신고해도 가정내 사건이라고 처리하지 않는다
③ 순찰을 와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자세히 순찰을 하지 않는다
④ 경찰공무원이 가해자인 한국인만을 편든다
⑤ 파출소 등의 문턱이 외국이주자에게는 너무 높아 권위적이다
⑥ 가정내에서 신고나 파출소 등에 가지를 못하게 한다
⑦ 경찰공무원 등을 보면 무서움이 많이 들고 친근하지가 않다

V. 자녀를 위한 치안 문제

1. 한국으로 이주해온 후 한국에서 결혼하여 출산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1-1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 1-1. 자녀를 출산하였으면 자녀는 몇 명입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이상
- 1-2.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몇 살입니까?
- ① 1-3세 ② 4-7세 ③ 8-10세 ④ 11-13세 ⑤ 14세이상
2. 자녀가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이나 폭행등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2-1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4번으로 가세요) ③ 모르겠다(4번으로 가세요)

2-1. 자녀가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이나 폭행 등을 당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해당항목 모두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피부색이 달라서 ② 언어가 달라서 ③ 문화가 달라서 ④ 잘 어울리지 못해서
⑤ 가정형편이 나빠서 ⑥ 기타()

3. 자녀가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이나 폭행 등을 당한 경우 학교나 상담기관(경찰 등) 등에 신고나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3-1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

3-1. 상담이나 신고를 한 경우 대처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바로 확인후 개선하였다 ② 신고와 상담만 한 후 아무런 처리가 없었다
③ 기타()

4. 자녀가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이나 폭행 등을 당할 경우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4-1번으로 가세요) ③ 잘모르겠다

4-1. 신고를 할 생각이 없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들의 사소한 문제이기 때문에 ② 신고해도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아서
③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④ 경찰서 등이 너무 멀리 있어서
⑤ 신고해도 접수해주지 않아서
⑥ 신고하면 오히려 아이들에 대하여 더 보복할까 두려워서

Ⅵ.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기관의 대응

1. 파출소 또는 경찰서를 신고나 방문할 경우 의사소통은 잘 됩니까?

- ① 예 ② 보통 ③ 아니오(1-1번으로 가세요)

1-1. 의사소통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어를 할 줄 몰라서 ② 경찰공무원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려고 하지 않아서
 ③ 외국인 이주자라고 무시하여서 ④기타()

2. 파출소 또는 경찰서를 방문할 경우 한국어를 할줄 몰라 어려운 점이 있나요?

- ① 예 ②보통 ③ 아니오

3.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방문자를 위하여 통역을 해 주시는 담당 경찰공무원이 있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4.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기관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순찰을 자주 돌아야한다
 ② 순찰을 돌면서 매번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으면 좋겠다
 ③ 동네에 경찰공무원이나 순찰초소가 있어 그곳에 경찰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④ 파출소나 경찰서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⑤ 기타 ()

5. 현재 살고계시는 동네가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하다 ③ 보통
 ④ 안전하지 않다 ⑤ 매우 안전하지 않다

6. 현재 살고계시는 동네가 경찰관이 순찰을 자주 돌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7. 경찰관이 순찰을 얼마나 자주 돕니까?
① 하루에 1-2회 ② 2일에 1-2회 ③ 3일에 1-2회
④ 4일에 1-2회 ⑤ 5일에 1-2회
8. 가정폭력 및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의 파출소나 경찰서 조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당 ② 적당 ③ 보통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9. 가정폭력 및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및 치안을 위한 활동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10.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기관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노력함 ② 노력함 ③ 보통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11. 경찰공무원 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동네별로 책임제로 각 가구별로 방문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12. 여러분이 사는 동네의 치안문제 등에 대하여 경찰관들에게 여러분의 고민을 신고나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담당 경찰관이나 파출소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 ① 있다 ② 없다

10. 남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 ② 어업 ③ 단순노동일 ④ 운전기사
 ⑤ 사무직 ⑥ 전문직 ⑦ 서비스종사자
 ⑧ 기타()

11. 현재 본인이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① 집안에서 가사일만 한다 ② 가사일과 집안 일(농사, 상업)을 한다
 ③ 맞벌이를 하러 직장(회사 및 식당 등)에 다닌다 ④ 기타 ()

12. 현재 시부모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3. 현재 시부모 외에 다른 시댁식구도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4. 현재 살고계시는 주거형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빌라 ④ 기타()

15. 현재 살고계시는 집이 다른 이웃들과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6. 현재 남편과 본인의 수입을 합하여 월평균 수입이 얼마입니까?

- ① 50만원미만 ② 50-100만원미만 ③ 100-200만원미만
 ④ 200-300만원미만 ⑤ 300-500만원미만 ⑥ 500만원이상

※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2

다문화 가정 치안 실태조사

(경찰관용)

부탁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로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치안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안환경을 변화시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연구과제로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경찰의 치안활동을 위한 역할’ 등에 대하여 여러분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경찰의 치안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주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여러분의 안전한 사회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내용은 연구의 통계자료로만 이용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586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연락처 : 김 원 중 교수

전 화 : 043-229-8989 팩스:043-229-8210

이메일 : k-won-j@hanmail.net / k-won-j@cju.ac.kr

I. 일반적인 사항

1. 외국여성이 한국 농촌총각 등과 결혼하여 구성된 다문화 가정의 실태 등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잘 안다 ③ 보통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2. 한국으로 이주하여 구성된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지원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잘 안다 ② 잘 안다 ③ 보통 ④ 잘 모른다 ⑤ 전혀 모른다
3.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대책 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II. 다문화 가정 실태에 관한 사항

1. 관할 지역내에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모르겠다
2. 다문화 가정내의 외국인 여성들이 일반 가정의 여성들 보다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에 시달린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다문화 가정내의 이주해온 외국인 여성들이 지역이나 사회로부터 따돌림이나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다문화 가정내의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이나 사회로부터 따돌림이나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Ⅲ. 다문화 가정의 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1. 다문화 가정을 방문(신고 등)시 외국인 여성 등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였습니까?
 ① 매우 원활 ② 원활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다문화 가정내의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2-1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
- 2-1.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출동하였습니까?
 ① 1주일에 1-2회 ② 1주일에 3-4회 ③ 1주일에 5-6회
 ④ 1개월에 1-2회 ⑤ 기타 ()
3. 다문화 가정내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하여 찾아간 후 다문화 가정 여성이나 가족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그렇지 않다(3-1번으로 가세요) ⑤ 전혀 그렇지 않다(3-1번으로 가세요)
- 3-1. 다문화 가정 여성이나 가족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② 남편 등의 보복이 두려워서
 ③ 자신에게 국가기관 등이 불이익 처분을 할까봐 ④ 기타()
4. 다문화 가정내 외국인 여성들이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경찰기관 등에 제

2-1. 만약 통역을 담당 해주시는 경찰공무원이 있는 경우 어느 나라 언어를 통역을 합니까?

- ① 중국어 ② 일본어 ③ 영어 ④ 태국어 ⑤ 기타()

2-2. 통역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필요할 경우 어느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파출소 ② 경찰서 ③ 기타()

2-3. 만약 통역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할 경우 몇 명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이상

2-4. 만약 통역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할 경우 어느 나라 언어를 통역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국어 ② 일본어 ③ 영어 ④ 태국어 ⑤ 기타()

3. 다문화 가정 여성의 가정폭력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기관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순찰을 자주 돌아야한다
 ② 순찰을 돌면서 매번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③ 동네에 경찰공무원이나 순찰초소가 있어 그곳에 경찰공무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④ 파출소나 경찰서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
 ⑤ 기타 ()

4.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전하다 ② 안전하다 ③ 보통 ④ 안전하지 않다 ⑤ 매우 안전하지 않다

5.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살고있는 장소에 대하여 순찰을 들고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6번으로 가세요)

5-1. 다문화 가정이 있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얼마나 자주 돕니까?

- ① 하루에 1-2회 ② 2일에 1-2회 ③ 3일에 1-2회
 ④ 4일에 1-2회 ⑤ 5일에 1-2회
6.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및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의 파출소나 경찰서 조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당 ② 적당 ③ 보통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7. 가정폭력 및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의 순찰활동 및 치안을 위한 활동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8.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기관이 다문화 가정의 치안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노력함 ② 노력함 ③ 보통 ④ 부족 ⑤ 매우 부족
9. 다문화 가정여성 및 그 자녀들을 위하여 경찰공무원 들이 지역별(동네별)로 책임제로 각 가구별로 방문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10. 다문화 가정 여성이나 자녀들의 치안확보를 위하여 순찰을 둘 경우 어떤 순찰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① 차량순찰 ② 오토바이순찰 ③ 자전거순찰 ④ 도보순찰
11. 다문화 가정 여성이나 자녀들의 치안확보를 위하여 방법심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11-1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 11-1. 방법심방을 할 경우 얼마나 자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1일 1-2회 ② 1주일에 1-2회 ③ 1주일에 3-4회
 ④ 1주일에 5-6회 ⑤ 1달에 1-2회 ⑥ 기타()

12. 다문화 가정 여성이나 자녀들의 안전한 치안을 위하여 이들 가정에 대한 관리를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 ① 경찰서 ② 파출소 또는 지구대 ③ 지방자치단체 ④ 기타()

13. 다문화 가정 여성이나 자녀들의 치안확보를 위하여 다문화 가정 전담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13-1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13-1. 다문화 가정 여성이나 자녀들의 치안확보를 위하여 전담경찰관이 필요할 경우 지구대(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이상

14. 다문화 가정 여성이나 자녀들의 안전한 치안을 위하여 이들 가정(외국인 이주 여성 및 자녀, 남편 포함)에 대한 치안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예(14-1번으로 가세요) ② 아니오

14-1. 다문화 가정 여성이나 자녀들의 안전한 치안을 위하여 이들 가정(외국인 이주 여성 및 자녀, 남편 포함)에 대한 치안교육이 필요할 경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찰공무원의 가정 방문 교육 ② 일정 장소에 모이게 한 후 교육
③ 사이버 교육 ④ 기타()

※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연령은? _____ 세
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2) 여
3.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4. 현재 근무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1) 지방경찰청 2)경찰서 3)지구대 또는 파출소
5. 현재 계급은 무엇입니까?
1)순경 2)경장 3)경사 4)경위 5)경감 6)경정 7)총경이상

※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보고서 2009-02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경찰의 치안역할 정립 방안 연구

2009년 10월 발행

2009년 10월 인쇄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인쇄처 : 제이케이컴퍼니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